




2018년 하반기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



2018년 하반기부터

#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적용 대상별·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 CONTENTS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38)

### 01 금융·재정·조세 (11)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을  
표기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3)

1.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군인) 43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일반기업) 44
3.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일반기업) 45

#### 국토교통부 (2)

1.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46
2.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청년(19세~29세)) 47

#### 중소벤처기업부 (1)

1.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근로자) 48

#### 관세청 (3)

1.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일반기업) 49
2.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50
3.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 (청년 이상(19세 이상)) 51



## 조달청 (2)

- |  |    |
|--|----|
|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청년 이상(19세 이상)) | 52 |
| 2.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청년 이상(19세 이상))    | 53 |

# 02 교육 (5)

## 교육부 (5)

- |  |    |
|--|----|
| 1.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교육기관)                     | 57 |
| 2.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근로자)               | 58 |
| 3.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근로자)                              | 59 |
| 4.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60 |
| 5.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3백만원) 지급 (중소기업) | 61 |

# 03 여성·육아·보육 (6)

## 여성가족부 (5)

- |   |    |
|---|----|
| 1.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65 |
|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66 |
| 3.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청소년(13세~18세))          | 67 |
|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인을 위한 비용 지원 (청소년(13세~18세)) | 68 |
|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청년~중장년(19세~64세))              | 69 |

## 방송통신위원회 (1)

- |                                     |    |
|-------------------------------------|----|
| 1.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일반국민) | 70 |
|-------------------------------------|----|

## 04 보건·사회복지 (18)

### 보건복지부 (14)

1.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감염병 관리 강화)	77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감염병 관리 강화)	78
3.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감염병 관리 강화)	81
4.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어린이집)	82
5.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일반국민)	83
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일반국민)	86
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87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장애인)	88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89
10.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영유아(0세~5세))	90
1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아동(생후 6개월~12세))	91
12.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아동(12세이하))	92
13.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어르신)	93
14.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어르신)	94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의약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소비자)	95
2.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96
3.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97

### 방송통신위원회 (1)

1.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8
---	----

## 05 공공안전 및 질서 (9)

### 행정안전부 (2)

- |                         |     |
|-------------------------|-----|
| 1.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일반기업) | 101 |
| 2.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일반국민)  | 102 |

### 여성가족부 (1)

- |   |     |
|---|-----|
| 1.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전연령) | 103 |
|---|-----|

### 관세청 (1)

- |                                       |     |
|---------------------------------------|-----|
| 1.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일반기업) | 105 |
|---------------------------------------|-----|

### 경찰청 (5)

- |   |     |
|---|-----|
| 1.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일반국민)  | 106 |
| 2.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자전거 운전자)         | 107 |
| 3.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차량 운전자)    | 108 |
| 4.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차량 운전자)        | 109 |
|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차량 운전자) | 110 |

## 06 국방·병무 (20)

### 국방부 (7)

- |   |     |
|---|-----|
| 1.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군인)       | 113 |
|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군인)             | 114 |
| 3.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마련 (군인)          | 115 |
| 4.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군인)              | 116 |
| 5.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군인)                     | 117 |
| 6.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연평해전 전사자)                  | 118 |
| 7.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토지소유자) | 119 |

## 국가보훈처 (4)

- |                                       |     |
|---------------------------------------|-----|
|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국가유공자 등) | 120 |
| 2.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국가유공자 등)        | 121 |
| 3. 인천보훈병원 개원 (국가유공자 등)                | 122 |
| 4.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123 |

## 병무청 (5)

- |   |     |
|---|-----|
| 1.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군인)                                | 124 |
| 2.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군인)                    | 125 |
| 3.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 (군인)                         | 126 |
| 4.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군인)              | 127 |
| 5.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청년(19세~29세)) | 128 |

### 독자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 방위사업청 (4)

- |   |     |
|---|-----|
| 1. 창·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군인)        | 129 |
| 2.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방위산업체)                    | 130 |
| 3.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방위산업체) | 131 |
| 4.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방위산업체)                   | 132 |

# 07 일반공공행정 (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  |     |
|--|-----|
| 1.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군로자) | 141 |
|--|-----|

## 외교부 (1)

- |                              |     |
|------------------------------|-----|
|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전연령) | 142 |
|------------------------------|-----|

## 행정안전부 (1)

- |                                     |     |
|-------------------------------------|-----|
| 1.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일반국민) | 143 |
|-------------------------------------|-----|

## 고용노동부 (13)

- |   |     |
|---|-----|
|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근로자)<br>(‘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 144 |
|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근로자)  | 146 |
|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                                     | 147 |
|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근로자)   | 148 |
|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근로자)                                     | 149 |
|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 150 |
| 7.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 151 |
|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일반기업)   | 152 |
| 9.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br>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일반기업)    | 153 |
| 1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일반기업)  | 154 |
| 1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일반기업)   | 155 |
| 12.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청소년~청년(15세~34세))                   | 156 |
| 13.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청소년~청년(15세~34세))                                     | 158 |

## 인사혁신처 (1)

- |                                       |     |
|---------------------------------------|-----|
| 1.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공무원) | 159 |
|---------------------------------------|-----|

## 특허청 (2)

- |  |     |
|--|-----|
| 1.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실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 160 |
| 2.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161 |

## 방송통신위원회 (1)

- |                                   |     |
|-----------------------------------|-----|
| 1.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일반기업) | 162 |
|-----------------------------------|-----|

## 공정거래위원회 (9)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3
2.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4
3.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5
4.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6
5.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7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8
7. 철저히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일반국민) 169
8.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대규모회사) 170
9. 수익형 부동산·렌탈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소비자) 171

### 꼭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을  
표기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

1.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72
2.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73

# 08 농림·해양·수산 (21)

## 농림축산식품부 (7)

1.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농·림·어업인) 179
2.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농·림·어업인) 180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농·림·어업인) 181
4.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어르신) 182
5.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농·림·어업인) 183
6.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어업인) 184
7.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농·림·어업인) 185

## 해양수산부 (11)

1.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농·림·어업인) 186
2.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농·림·어업인) 187
3.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농·림·어업인) 188

4.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어업인)	189
5.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농·림·어업인)	190
6.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근거마련 (농·림·어업인)	191
7.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청년 이상(19세 이상))	192
8.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청년 이상(19세 이상))	193
9.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 (청년 이상(19세 이상))	194
10.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크루즈부두 편, 신설 (청년 이상(19세 이상))	195
11.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관련 설계기준 신설 (청년 이상(19세 이상))	196

## 산림청 (2)

1.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공무원)	197
2.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 (공무원)	198

## 기상청 (1)

1.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을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농·림·어업인)	199
--	-----

# 09 산업·에너지·자원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5
---	-----

## 산업통상자원부 (2)

1.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일반기업)	206
2.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07

## 중소벤처기업부 (3)

1.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중소기업)	208
2.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중소기업)	209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10



## 산림청 (1)

- |                          |     |
|--------------------------|-----|
|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일반기업) | 211 |
|--------------------------|-----|

# 10 환경 (9)

## 환경부 (7)

- |   |     |
|---|-----|
| 1.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일반기업)                                    | 215 |
| 2.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일반기업)  | 217 |
|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일반기업)                                    | 218 |
| 4.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일반기업)   | 219 |
| 5.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일반기업)                                     | 220 |
| 6.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일반기업)   | 221 |
|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3등급까지<br>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 222 |

### 꼭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분·정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하였습니다.



## 기상청 (2)

- |                            |     |
|----------------------------|-----|
| 1.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일반국민)     | 223 |
| 2.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일반국민) | 224 |

# 11 문화재 (1)

## 문화재청 (1)

- |  |     |
|--|-----|
| 1. 문화재매매업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문화재매매업자) | 229 |
|--|-----|

##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15)

### 감염병 관리 강화 (3)

#### 보건복지부 (3)

1.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77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78
3.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81

### 공무원 (3)

#### 인사혁신처 (1)

1.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159
---------------------------------	-----

#### 산림청 (2)

1.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197
2.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	198

### 교육기관 (1)

#### 교육부 (1)

1.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57
-------------------------------------	----

## 국가유공자 등 (3)

### 국가보훈처 (3)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120
2.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121
3. 인천보훈병원 개원	122

## 군인 (11)

### 기획재정부 (1)

1.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43
-----------------------------	----

### 국방부 (5)

1.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113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114
3.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마련	115
4.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116
5.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117

### 병무청 (4)

1.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으로 민원편의 제고	124
2.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125
3.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	126
4.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127

### 방위사업청 (1)

1.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129
--	-----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근로자 (11)

### 교육부 (2)

- |  |    |
|--|----|
| 1.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58 |
| 2.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 5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  |     |
|--|-----|
| 1.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 141 |
|--|-----|

### 고용노동부 (7)

- |   |     |
|---|-----|
|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br>(‘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 144 |
|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 146 |
|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147 |
|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 148 |
|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149 |
|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150 |
| 7.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 151 |

### 중소벤처기업부 (1)

- |   |    |
|---|----|
| 1.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 48 |
|---|----|

## 농·림·어업인 (13)

### 농림축산식품부 (6)

- |   |     |
|---|-----|
| 1.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 179 |
| 2.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 180 |
|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 181 |
| 4.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 183 |
| 5.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 184 |
| 6.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 185 |

## 해양수산부 (6)

1.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186
2.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187
3.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188
4.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89
5.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190
6.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근거마련	191

## 기상청 (1)

1.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을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199
--------------------------------------	-----

## 대규모회사 (1)

### 공정거래위원회 (1)

1. 대규모회사의 화재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170
-----------------------------------	-----

## 문화재매매업자 (1)

### 문화재청 (1)

1. 문화재매매업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화	229
------------------------------------	-----

### 꼭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방위산업체 (3)

### 방위사업청 (3)

1.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130
2.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131
3.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132

## 소비자 (3)

### 식품의약품안전처 (2)

- |                                 |    |
|---------------------------------|----|
| 1. 의약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 95 |
| 2.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 96 |

### 공정거래위원회 (1)

- |                                   |     |
|-----------------------------------|-----|
| 1. 수익형 부동산·렌탈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 171 |
|-----------------------------------|-----|

## 어린이집 (1)

### 보건복지부 (1)

- |                    |    |
|--------------------|----|
| 1.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 82 |
|--------------------|----|

## 연평해전 전사자 (1)

### 국방부 (1)

- |                     |     |
|---------------------|-----|
| 1.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 118 |
|---------------------|-----|

## 일반국민 (9)

### 행정안전부 (2)

- |                              |     |
|------------------------------|-----|
| 1.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 102 |
| 2.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 143 |

## 보건복지부 (2)

- |                                  |    |
|----------------------------------|----|
|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 83 |
| 2.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86 |

## 경찰청 (1)

- |                                 |     |
|---------------------------------|-----|
| 1.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106 |
|---------------------------------|-----|

## 기상청 (2)

- |                     |     |
|---------------------|-----|
| 1.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 223 |
| 2.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 224 |

## 방송통신위원회 (1)

- |                              |    |
|------------------------------|----|
| 1.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 70 |
|------------------------------|----|

## 공정거래위원회 (1)

- |   |     |
|---|-----|
| 1.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 169 |
|---|-----|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일반기업 (18)

### 기획재정부 (2)

- |                                |    |
|--------------------------------|----|
| 1.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44 |
| 2.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 45 |

### 행정안전부 (1)

- |                  |     |
|------------------|-----|
| 1.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 101 |
|------------------|-----|



## 산업통상자원부 (1)

- |  |     |
|--|-----|
| 1.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 206 |
|--|-----|

## 환경부 (6)

- |                           |     |
|---------------------------|-----|
| 1.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 215 |
| 2.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 217 |
|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 218 |
| 4.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 219 |
| 5.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 220 |
| 6.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 221 |

## 고용노동부 (4)

- |  |     |
|--|-----|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 152 |
| 2.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 153 |
|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154 |
|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 155 |

## 관세청 (2)

- |                                |     |
|--------------------------------|-----|
| 1.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 49  |
| 2.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 105 |

## 산림청 (1)

- |                   |     |
|-------------------|-----|
|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 211 |
|-------------------|-----|

## 방송통신위원회 (1)

- |                            |     |
|----------------------------|-----|
| 1.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 162 |
|----------------------------|-----|

## 자전거 운전자 (1)

### 경찰청 (1)

- |                       |     |
|-----------------------|-----|
|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107 |
|-----------------------|-----|

## 장애인 (2)

### 보건복지부 (2)

- |                           |    |
|---------------------------|----|
|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 87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 88 |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 |                          |     |
|--------------------------|-----|
| 1.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 205 |
|--------------------------|-----|

### 산업통상자원부 (1)

- |                               |     |
|-------------------------------|-----|
| 1.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 207 |
|-------------------------------|-----|

### 중소벤처기업부 (1)

- |                         |     |
|-------------------------|-----|
|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 210 |
|-------------------------|-----|

### 관세청 (1)

- |                                |    |
|--------------------------------|----|
| 1.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 50 |
|--------------------------------|----|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특허청 (1)

- |                               |     |
|-------------------------------|-----|
| 1.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실시 | 160 |
|-------------------------------|-----|

## 방송통신위원회 (1)

- |                      |    |
|----------------------|----|
| 1.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 98 |
|----------------------|----|

## 공정거래위원회 (6)

- |                                       |     |
|---------------------------------------|-----|
|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163 |
| 2.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 164 |
| 3.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165 |
| 4.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 166 |
| 5.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 금지       | 167 |
|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 168 |

## 중소기업 (3)

### 교육부 (1)

- |   |    |
|---|----|
| 1.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3백만원) 지급 | 61 |
|---|----|

### 중소벤처기업부 (2)

- |                     |     |
|---------------------|-----|
| 1.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 208 |
| 2.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 209 |

## 차량 운전자 (3)

### 경찰청 (3)

- |                                |     |
|--------------------------------|-----|
| 1.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 108 |
| 2.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 109 |
| 3.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110 |

##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1)

### 교육부 (1)

- |                           |    |
|---------------------------|----|
| 1.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 60 |
|---------------------------|----|

### 보건복지부 (1)

- |                              |    |
|------------------------------|----|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 89 |
|------------------------------|----|

### 환경부 (1)

- |   |     |
|---|-----|
| 1.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222 |
|---|-----|

### 국토교통부 (1)

- |                                  |    |
|----------------------------------|----|
| 1.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 46 |
|----------------------------------|----|

### 여성가족부 (2)

- |                                 |    |
|---------------------------------|----|
| 1.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 65 |
|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 66 |

### 국가보훈처 (1)

- |                  |     |
|------------------|-----|
| 1.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 123 |
|------------------|-----|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                           |    |
|---------------------------|----|
| 1.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 97 |
|---------------------------|----|

### 특허청 (1)

- |                                   |     |
|-----------------------------------|-----|
| 1.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 161 |
|-----------------------------------|-----|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

---

- |                   |     |
|-------------------|-----|
| 1.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 172 |
| 2.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 173 |

## 토지소유자 (1)

### 국방부 (1)

---

- |   |     |
|---|-----|
| 1.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 119 |
|---|-----|

##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23)

### 영유아(0세~5세) (1)

#### 보건복지부 (1)

- |   |    |
|---|----|
| 1.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90 |
|---|----|

### 영유아~아동(생후 6개월~12세) (1)

#### 보건복지부 (1)

- |                       |    |
|-----------------------|----|
| 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91 |
|-----------------------|----|

### 아동(12세 이하) (1)

#### 보건복지부 (1)

- |                                |    |
|--------------------------------|----|
| 1. 12세 이하 광증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92 |
|--------------------------------|----|

### 청소년(13세~18세) (2)

#### 여성가족부 (2)

- |                                    |    |
|------------------------------------|----|
| 1.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 67 |
|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인을 위한 비용 지원 | 68 |

####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청년 이상(19세 이상) (8)

### 해양수산부 (5)

1.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192
2.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193
3.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	194
4.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크루즈부두 편」 신설	195
5.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관련 설계기준 신설	196

### 관세청 (1)

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	51
-----------------------	----

### 조달청 (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52
2.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53

## 청소년~청년(15세~34세) (2)

### 고용노동부 (2)

1.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156
2.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158

## 청년(19세~29세) (2)

### 국토교통부 (1)

1.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47
---------------------------------	----



## 병무청 (1)

- |  |     |
|--|-----|
| 1.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br>'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 128 |
|--|-----|

## 청년~중장년(19세~64세) (1)

### 여성가족부 (1)

- |                    |    |
|--------------------|----|
|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69 |
|--------------------|----|

## 어르신 (3)

### 농림축산식품부 (1)

- |   |     |
|---|-----|
| 1.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 182 |
|---|-----|

### 보건복지부 (2)

- |                                |    |
|--------------------------------|----|
| 1.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 93 |
| 2.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 94 |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전연령 (2)

### 외교부 (1)

- |                        |     |
|------------------------|-----|
|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 142 |
|------------------------|-----|

### 여성가족부 (1)

- |                                   |     |
|-----------------------------------|-----|
| 1.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 103 |
|-----------------------------------|-----|



##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38)

### 기획재정부 (3)

#### 금융·재정·조세 (3)

1.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43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44
3.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45

### 교육부 (5)

#### 교육 (5)

1.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57
2.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58
3.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59
4.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60
5.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3백만원) 지급	6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 일반공공행정 (1)

1.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141
--	-----

#### 산업·에너지·자원 (1)

1.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205
--------------------------	-----

## 외교부 (1)

### 일반공공행정 (1)

- |                        |     |
|------------------------|-----|
| 1.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 142 |
|------------------------|-----|

## 국방부 (7)

### 국방·병무 (7)

- |   |     |
|---|-----|
| 1.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 113 |
|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 114 |
| 3.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마련       | 115 |
| 4.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 116 |
| 5.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 117 |
| 6.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 118 |
| 7.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 119 |

## 행정안전부 (3)

### 공공안전 및 질서 (2)

- |                  |     |
|------------------|-----|
| 1.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 101 |
| 2.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 102 |

### 일반공공행정 (1)

- |                              |     |
|------------------------------|-----|
| 1.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 143 |
|------------------------------|-----|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7)

### 농림·해양·수산 (7)

- |                                  |     |
|----------------------------------|-----|
| 1.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 179 |
|----------------------------------|-----|

2.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180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181
4.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182
5.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183
6.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184
7.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185

## 산업통상자원부 (2)

### 산업·에너지·자원 (2)

1.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206
2.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207

## 보건복지부 (14)

### 보건·사회복지 (14)

1.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77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78
3.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81
4.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82
5.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83
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86
7.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87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88
9.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89
10.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90
1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91
12.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92
13.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93
14.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94

## 환경부 (7)

### 환경 (7)

1.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215
2.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217
3.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218
4.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219
5.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220
6.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221
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222

## 고용노동부 (13)

### 일반공공행정 (13)

1.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144
2.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146
3.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147
4.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148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	149
6.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50
7.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151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152
9.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153
10.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154
1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155
12.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156
13.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158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 (6)

### 여성·육아·보육 (5)

1.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을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65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66
3.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67
4.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68
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69

### 공공안전 및 질서 (1)

1.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103
-----------------------------------	-----

## 국토교통부 (2)

### 금융·재정·조세 (2)

1.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46
2.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47

## 해양수산부 (11)

### 농림·해양·수산 (11)

1.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186
2.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187
3.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188
4.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89
5.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 기준 마련	190
6.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근거마련	191
7.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192
8.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193
9.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	194

- 10.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크루즈부두 편」 신설 195
- 11.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관련 설계기준 신설 196

## 중소벤처기업부 (4)

### 금융·재정·조세 (1)

- 1.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48

### 산업·에너지·자원 (3)

- 1.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208
- 2.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209
- 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210

## 국가보훈처 (4)

### 국방·병무 (4)

-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120
- 2.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121
- 3. 인천보훈병원 개원 122
- 4.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123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1)

### 일반공공행정 (1)

- 1.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159



## 식품의약품안전처 (3)

### 보건·사회복지 (3)

1. 의약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95
2.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96
3.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97

## 관세청 (4)

### 금융·재정·조세 (3)

1.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49
2.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50
3.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	51

### 공공안전 및 질서 (1)

1.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105
--------------------------------	-----

## 조달청 (2)

### 금융·재정·조세 (2)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52
2.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53

## 병무청 (5)

### 국방·병무 (5)

1. 귀화자 전시간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124
2.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125

- |   |     |
|---|-----|
| 3.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                | 126 |
| 4.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 127 |
| 5.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 128 |

## 방위사업청 (4)

### 국방·병무 (4)

- |   |     |
|---|-----|
| 1.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 129 |
| 2.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 130 |
| 3.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 131 |
| 4.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132 |

## 경찰청 (5)

### 공공안전 및 질서 (5)

- |                                 |     |
|---------------------------------|-----|
| 1.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106 |
| 2.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 107 |
| 3.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 108 |
| 4.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 109 |
|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110 |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문화재청 (1)

### 문화재 (1)

- |                                    |     |
|------------------------------------|-----|
| 1. 문화재매매업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화 | 229 |
|------------------------------------|-----|

## 산림청 (3)

### 농림·해양·수산 (2)

- |                   |     |
|-------------------|-----|
| 1.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197 |
| 2.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  | 198 |

### 산업·에너지·자원 (1)

- |                   |     |
|-------------------|-----|
| 1.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 211 |
|-------------------|-----|

## 특허청 (2)

### 일반공공행정 (2)

- |                                   |     |
|-----------------------------------|-----|
| 1.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실시     | 160 |
| 2.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 161 |

## 기상청 (3)

### 농림·해양·수산 (1)

- |                                      |     |
|--------------------------------------|-----|
| 1.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을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 199 |
|--------------------------------------|-----|

### 환경 (2)

- |                     |     |
|---------------------|-----|
| 1.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 223 |
| 2.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 224 |

## 방송통신위원회 (3)

### 여성·육아·보육 (1)

- |                              |    |
|------------------------------|----|
| 1.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 70 |
|------------------------------|----|

## 보건·사회복지 (1)

- |                      |    |
|----------------------|----|
| 1.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 98 |
|----------------------|----|

## 일반공공행정 (1)

- |                            |     |
|----------------------------|-----|
| 1.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 162 |
|----------------------------|-----|

## 공정거래위원회 (9)

### 일반공공행정 (9)

- |   |     |
|---|-----|
|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163 |
| 2.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 164 |
| 3.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165 |
| 4.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 166 |
| 5.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 금지         | 167 |
| 6.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 168 |
| 7.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 169 |
| 8.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 170 |
| 9. 수익형 부동산·렌탈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 171 |

### 목차보는 Tip

달리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  
부처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2)

### 일반공공행정 (2)

- |                   |     |
|-------------------|-----|
| 1.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 172 |
| 2.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 173 |





# 분야별

## 달라지는 주요제도

1. 금융·재정·조세
2. 교육
3. 여성·육아·보육
4. 보건·사회복지
5. 공공안전 및 질서
6. 국방·병무
7. 일반공공행정
8. 농림·해양·수산
9. 산업·에너지·자원
10. 환경
11. 문화재



# 01

##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조달청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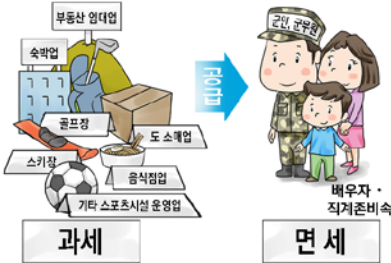
## 1 기획재정부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Before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과세 대상도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After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



## 2 기획재정부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Before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After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3 국토교통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시행일 : 2018년 7월말

Before

일반 청약저축에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 자격요건: 저소득·무주택·세대주청년
- (나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소득) 3천만원 이하

After



### 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Before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 촉진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 + (정부) 3년간 1,080만원 지원 = 3,000만원(5년)

After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청년재직자가 5년 근속시 3천만원 목돈 마련





##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6)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국가등\*이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용역은 2018.7.1.부터 과세로 전환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

###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

- **추진배경**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국가등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세하나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과세(2007.7.1.부터)
    - 다만, 위 재화와 용역 중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 ②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되는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과세로 전환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기획재정부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422) 국제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 044-204-2882)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상됩니다.

▣ 2018년 7월 1일부터 원천징수의무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지급액 요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것	30억원 → 20억원
규모 요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 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현행과 동일
업종 요건	항공운수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2018년 7월 1일 이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원천징수의무자)이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한 외국법인에게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9%\*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 (현행) 지급금액의 17% → (개정) 19%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 **추진배경**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 : 지급액 요건 강화(30억원 초과\* → 20억원 초과),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  
\*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을 초과할 것
  - ② 원천징수세율 인상 : 17% → 19%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875)

수출업체의 관세 과다환급에 따른 추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제'가 실시됩니다.

■ 관세 환급 신청에 앞서, 소요량 계산방법 및 산정된 소요량의 적정성을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 ② 해당 세관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제조공정 등 확인이 필요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50일)내 심사결과 통지
- ③ 통지 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
- ④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소요량 계산 및 환급

■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환급신청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 사실관계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는 효력 상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 관세환급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도입

- **추진배경** 과다환급 관세 추징 등에 따른 수출업체 부담완화
- **주요내용**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도입
  - 관할지 세관장에 소요량 계산서 등 제출 후 30일 내 심사결과통지
  -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간 사전심사결과 유효(환급신청)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044-201-3358~9)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17.8,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하였습니다.

■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6.6% 인상하였고,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15년 이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8% 인상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

###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추진배경**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 빈곤층에게 급여 확대 실시
- **주요내용**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주거급여법」 개정)  
\* 수급자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기간(8~9월) 운영 예정
-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myhome.go.kr)

##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0)

청년시절부터 내집·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재산형성기능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 부여할 예정입니다.

- 금리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 동안 일반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를 우대하여 최대 3.3%를 적용하게 되며,
- 2년 이상 가입한 자에 한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추진계획

- **추진배경** 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하여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기반 마련 지원
- **주요내용** ①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천만원 이하(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 세대주  
② 혜택내용 :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 제공,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말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인재활용촉진과 (☎ 042-481-4465)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합니다.(6.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 촉진 및 목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 기업이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청년 근로자와 공제금을 5년간 함께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년 720만원(5년), 기업 1,200만원(5년), 정부 최대 1,080만원(3년) ⇒ 3,000만원(5년)

가입대상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이며, 군복무 시 복무기간만큼 연령 추가 인정됩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 추진배경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 목돈마련 지원
- 주요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최소 월 12만원)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최소 월 20만원)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정액 지원)

(적립 구조(안))

	소계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총계
본인 납입	720	매월 12 × 60개월=720							
정부 지원	1,080	120	120	150	150	180	180	180	
기업 납입	1,200	매월 20 × 60개월=1,200							

-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 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

관세청 특수통관과 (☎ 042-481-7835)

수입신고 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특송화물 관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는 목록통관 탁송품의 실제 배송된 주소지 정보만 제출받아 사후 통관관리 하였으나,
- ▣ '18년 하반기부터 수입신고되는 탁송품도 실제 배송지 정보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특송 화물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공고

###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특송물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수입신고 건 배송지 정보제출대상 확대 시행
  - 관세법 개정 : '18. 1. 1.
  - 시행지침 시달 : '18. 1. 18.
  - 특송 수입통관 고시 개정 : '18. 7월
  - 시범운영 : '18. 7. 1 ~ 9. 30.
  - ※ 업체 시스템 개선 등 준비기간 감안 6월말까지 시행유보
- **시행일** 2018년 10월

## 관세청

# 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 확인 가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 042-481-3211)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져 해당 쌀을 원료로 사용한 쌀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지금까지는, 정부양곡 국내산 쌀을 사용하여 떡볶 떡을 가공하여 이탈리아로 수출을 하는 업체의 경우, 재료로 사용된 쌀의 원산지 확인이 어려워 한-EU FTA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 앞으로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 공급확인서’를 통해 재료로 사용된 쌀의 원산지(국내산)를 확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산 농림수산물에 원산지확인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보도자료>정부양곡 국산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확인 가능해진다.

### 2018년도 자유무역 협정 원산지 간편 인정대상 확대

- **추진배경** 국내산 농림수산물이 간편하게 원산지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대상 품목 및 서류 확대)
- **주요내용** ①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품목 추가(공공비축미)  
② 원산지 간편 인정 대상 품목 추가(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 **시행일** 2018년 5월 3일

## 일시수출입하는 차량 신고세관 확대

관세청 특수통관과 (☎ 042-481-7836)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출입 신고시 최초 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하였던 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는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의 재수입 및 재수출 신고시 최초 수출입 통관지 세관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 ▣ 이에, 재수출입 신고 세관을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행 후 희망하는 공항만 세관에서 재수출입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공고

### 일시수출입 차량 신고세관 확대 추진

- **추진배경** 일시수출입국자의 편의를 고려한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
- **주요내용** 재수출입 신고세관 확대
  - 최초 수출입 통관지세관 신고 → 전국 공항만 세관 신고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조달청

##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338)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기업 수주를 지원하고,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토목·건축공사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여성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회적약자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 복합업종 공사의 시공경험(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시 대상 업종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주업종 실적을 평가함에도 전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적격심사 기준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제도의 정합성 확보
- **주요내용**

  - ①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 확대
    -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 10% 가산 평가 대상을 토목·건축공사 10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으로 조정
  - ② 복합업종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선
    - 최근 5년간 복합업종 시공경험 평가시 전체공사 기초금액에서 평가대상 기초금액으로 개선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가능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464)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단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그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체결 시 확정되고 물품 주문 시 이를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목적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 수요기관이 필요한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 하자기간을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개정하여 5.28일부터 시행합니다.

  - 다만,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이 허용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업무별자료>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 제6항 및 제7항)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허용
- **주요내용**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수요기관과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변경 가능

②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고 추가 비용 정산 등 상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허용
- **시행일** 2018년 5월 28일



# 02

## 교육

교육부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교육부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시행일 : 2018년 9월

Before

신 설

After

선취업 후학습 문화 활성화하여 청년일자리 지원



- 2018년 2학기부터 고졸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2 교육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  
(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3백만원) 지급

시행일 : 2018년 10월

Before

신 설

After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3학생(졸업예정자)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학생 1인당 총 3백만원  
취업연계장려금 지급





##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 044-203-6808)

'17.11.28.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18.5.29. 시행됨에 따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의 평의원 1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 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시 대학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평의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 대학이 평의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

- 추진배경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설치·운영
- 주요내용 (심의·자문)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운영)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 회의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공개 등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교육부

#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 044-203-6494)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을 신설하여,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 고교 졸업 후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해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들은, 장학금 혜택에 소외되는 등 큰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2018년 2학기부터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여, 후학습자(대학 1~4학년)들이 언제든지 학비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도 지원 인원을 900명(3,600명 → 4,500명)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요 원인인 중소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선취업 후학습' 문화를 활성화
- 주요내용
  - ①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 (대학교 1~4학년)
  - ② 지원 내용 : 학기별 대학 등록금 전액
- 시행일 2018년 9월

##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 044-203-6342)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성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직무능력을 선택하여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18년 9월부터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한국형 나노디그리)'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 매치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미래형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 학습자가 원하는 직무를 6개월 내외의 단기간에 익힐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 중심으로 운영되며,
  -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습자는 기업으로부터 해당 분야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음을 인증 받게 됩니다.
- 9월부터 인공지능 분야(KT 인증)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매치업 홈페이지([www.matchup.kr](http://www.matchup.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매치업(Match業) 홈페이지 [www.matchup.kr](http://www.matchup.kr)

### 매치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

- **추진배경** 지식의 생명 주기 감소 및 고용노동시장의 변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성인학습자를 위한 유연한 형태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요구 증가
- **주요내용** ①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산업체가 제시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직무능력을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프로그램 실시  
② 매치업 이수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인증평가 → 대표기업 명의의 인증서 발급
- **시행일** 2018년 9월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392)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 교육복지의 영역이 평생교육 단계로 확대되어, 저소득층 5,000여명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씩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학습자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학력인정 교육 과정 등),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매치업, 대학평생교육원 교육 등)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201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 및 지원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or.kr)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계획

- **추진배경**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주요내용**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0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강에 활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연간 35만원)
- **시행일** 2018년 6월(신청자 접수 시작 예정)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 (졸업예정자)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3백만원) 지급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395)

올 하반기부터 직업계고\* 및 일반고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3학생(졸업예정자) 2만4천명에게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학생 1인당 총 3백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원조건은 중소기업에 6개월동안 의무적으로 종사가 필요하며, 사업 이해 등 일정시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 2018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안내

- 추진배경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하는 학생(고3)들의 고졸 취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
- 주요내용
  - ① 지원대상 : 직업계고(3학년) +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3학년) 졸업예정자 2만4천명
  - ② '18년 추경예산 지원액 : 국고 735억원
  - ③ 1인당 지급액 : 총 3백만원(일시금)
  - ④ 지원조건 : 중소기업 의무종사 6개월 유지(미 이행시 환수)를 조건으로 일정시간 사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취업계층 우선 지원
  - ⑤ 기업 : 고용부 성장유망업종 10인 이상 중소기업 취업 우선 지원
  - ⑥ 지급시기 : 중소기업 취업(약정) 확인후 10월부터 지급
- 시행일 2018년 10월



# 03

## 여성·육아·보육

---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시행일 : 2018년 9월 14일

Before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있었음



After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2, 6393)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18년 4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8년 9월부터는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이는 '18.9.14일 시행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지원문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온라인게시판 [www.women1366.kr/stopds](http://www.women1366.kr/stopds) 상담시간 : 10:00~17:00(평일)

### 디지털 성범죄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 **추진배경**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삭제 요청을 하거나, 자비로 '디지털 기록물 삭제 전문 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신청 고통과 금전적 부담이 있었음
- **주요내용**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근거 및 구상권 행사 근거 신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18.3.13) 제7조의3(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 ③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2항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 삭제 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18년 9월 14일

# 여성가족부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4, 6346)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연장합니다.

-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월 20만원 씩 6개월간(최장 9개월) 지원하고 있으나, '18년 9월 28일부터는 지원기간이 9개월(최장 12개월)로 연장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온라인 신청

<b>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강화</b>	<b>추진배경</b>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 지원
	<b>주요내용</b>	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연장 * 지원기간 : (변경전) 기본 6개월, 연장시 9개월 → (변경후) 기본 9개월, 연장시 12개월  ② 긴급지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가능
	<b>시행일</b>	2018년 9월 28일

##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63)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 중 소규모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은 다른 용도시설과 복합으로 설치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 기존 시설물 중 일부공간을 활용할 수 없거나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가 가능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의 복합 설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법령현황>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 청소년수련시설 복합시설 설치 제한 완화 계획

- **추진배경** 복합시설 설치로 건립비용 절감 및 운영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개선(복합설치 제한 → 복합설치 완화\*)  
\* 복합설치 가능 시설 : 문화시설, 체육시설
- **시행일** 2018년 7~8월(잠정,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한 비용 지원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5)

건강검진 후 질병 확진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의심 질환에 대해 2018년 7월 17일부터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 ▣ 이를 통하여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 하겠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진 지원

- 추진배경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지급 필요
-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후 질환의심 질환에 대한 확진 비용 지원
- 시행일      2018년 7월 17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7.17.)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8, 6209)

경력단절여성에게 구인·구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ی겠습니다.

\* 새일센터 수 : ('16)150개소 → ('17)155개소 → ('18)158개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 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 주요내용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소 추가 지정
- 시행일 2018년 10월 이후 공고 및 심사, 12월 개소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예방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8)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6월부터 유료 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별풍선) 결제 한도가 제한이 없어, 인터넷개인방송 진행자가 유료 아이템을 많이 받기 위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방송을 진행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의 사이버머니의 결제 한도를 설정하여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아이템 결제 한도 1일 100만원 이하로 자율규제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결제 예방 자율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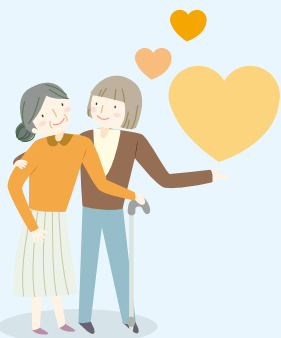
- **추진배경** 인터넷 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 **주요내용** 유료 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04

## 보건·사회복지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시행일 : 2018년 7월

Before

소득이 적지만 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가 있었던 반면, 소득이 충분해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After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 부담하게 됩니다.



## 2 보건복지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Before

입원실 중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적용, 1~3인실(상급병원)의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



After

'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3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18년 9월

Before

그동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After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18년 9월부터는 큰 폭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현행 20만9,960원 → 25만원으로 인상

### 4 보건복지부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시행일 : 2018년 9월  
(18.6.20일 사전 신청 접수시작)

Before

한국의 GDP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After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9월 아동수당 도입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5 보건복지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시행일 : 2018년 9월 11일  
 (초회 접종, 기초 2회 접종 대상자의 경우 해당, 1회 접종자는 10월 2일부터 시행)

Before

'17년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After

'18년 9월부터 무료접종 지원대상을 생후 6개월~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하여 인플루엔자 전파방지 및 아동 건강보호에 노력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  
 생후 6개월~ 만 5세 미만 → 생후 6개월~12세 이하로 확대

## 6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시행일 : 2018년 9월

Before

기초연금은 '14년 7월 제도 도입이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왔습니다.



After

기초연금은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현행 20만원 → 25만원으로 대폭 인상

## 7 보건복지부

###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시행일 : 2018년 9월 20일

Before

그동안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 취약계층 치매어르신들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After

'18년 9월 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됩니다.





##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 043-719-7131)

2014년 이후 지역사회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7개소)을 2018년 하반기에 2개소 추가 운영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 (‘14년) 경기 (‘15년) 경기 (‘16년) 서울, 부산, 전북, 제주 (‘17년) 대구, 인천 (‘18년) 충남, 전남

-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관리 및 신종감염병 유입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등대응이 가능하도록 시도감염병대응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도감염병관리 지원단 2개소 확대 운영

- 추진배경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 주요내용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관리 및 신속한 초등대응이 가능하도록 시도감염병대응조직 확대(총 7개소 → 9개소)
- 시행일 2018년 7월

# 보건복지부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지역 신규 선정

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 043-719-7140)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현행 59개국에서 58개국으로 변경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오염인근지역 1개국을 신규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 검역감염병(9종\*) 중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6종 대상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변경(지정·해제) 하였습니다.

\* 콜레라,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폴리오,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감염병증후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사항〉	
① (콜레라) 14개국 → 15개국	④ (폴리오) 5개국 → 7개국
② (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2개국 → 1개국	⑤ (페스트) 1개국 → 1개국(변동없음)
③ (중동호흡기증후군) 4개국 → 3개국	⑥ (황열) 42개국 → 42개국(변동없음)

- 특히, '카타르'의 경우 이번에 메르스 오염지역에서 해제되었으나 메르스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 \*\*하여 향후에도 입국자 검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메르스 원발생지역(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접지역이며, 국내 직항기 운항 및 국내 입국시 주요 경유 국가임에 따라 선정(입국자 검역조치는 오염지역과 동일)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해외질병>검역감염병 오염지역

###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 변경 및 오염 인근지역 선정 실시

- **추진배경** 해외감염병 발생 변화에 따른 감염병 오염지역(오염인근지역) 지정 현행화
- **주요내용**
  - ① 오염지역 변경(59개국 → 58개국)
    - 지정 : (콜레라) 말라위, 잠비아 / (폴리오) 케냐, 소말리아
    - 해제 : (콜레라) 아이티 / (AI) 이집트 / (메르스) 카타르
    - 변경 : (AI) 중국 전체(홍콩, 마카오 제외) → 11개 성·시
  - ②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신규 지정 : 카타르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58개국)

(18. 7.1.기준)

구분	국가 (58개국)	콜레라 (15)	페스트 (1)	황열 (42)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	중동호흡기 증후군(3)	폴리오 (7)
아시아 · 중동 10 개국	1	Pakistan					○
	2	China*(11개 성·시)			○		
	3	Afghanistan					○
	4	Saudi Arabia				○	
	5	United Arab Emirates				○	
	6	Oman				○	
	7	Yemen	○				
	8	Philippines	○				
	9	Syria					○
	10	India	○				
아프리카 35 개국	1	Cameroon			○		
	2	Democratic Republic of Congo(DRC)	○		○		○
	3	Republic of Congo	○		○		
	4	Angola	○		○		
	5	Benin			○		
	6	Burkina Faso			○		
	7	Burundi			○		
	8	Central African Republic			○		
	9	Chad			○		
	10	Cote d'Ivoire			○		
	11	Equatorial Guinea			○		
	12	Ethiopia			○		
	13	Gabon			○		
	14	Gambia			○		
	15	Ghana			○		
16	Guinea			○			
17	Guinea Bissau			○			
18	Kenya	○		○		○	
19	Liberia			○			
20	Mali			○			
21	Malawi	○					
22	Mauritania			○			
23	Niger			○			

## 보건복지부

아 프 리 카  35 개 국	24	Nigeria	○		○			○
	25	Sierra Leone			○			
	26	Senegal			○			
	27	South Sudan	○		○			
	28	Sudan	○		○			
	29	Togo			○			
	30	Uganda	○		○			
	31	Madagascar		○				
	32	Tanzania	○					
	33	Somalia	○					○
	34	Mozambique	○					
	35	Zambia	○					
	아 메 리 카  13 개 국	1	Argentina			○		
2		Bolivia			○			
3		Brazil			○			
4		Colombia			○			
5		Ecuador			○			
6		French Guiana			○			
7		Guyana			○			
8		Panama			○			
9		Paraguay			○			
10		Peru			○			
11		Suriname			○			
12		Trinidad and Tobago			○			
13		Venezuela			○			

\* 중국 11개 성·시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 베이징시, 신장위구르자치구, 안후이성, 윈난성, 장쑤성, 푸젠성, 후난성

\*\* 중국 오염지역은 검역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규모 등 특성에 따라 성(省)·시(市)로 지정될 수 있음

### ※ 검역감염병 오염인근지역 지정

#### ◆ 메르스 오염인근지역 : '카타르'(신규 지정)

'카타르'는 메르스 원발생지역(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접지역이며, 국내 직항기 운항 및 국내 입국시 주요 경유 국가임에 따라 검역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의거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입국자 검역조치는 오염지역과 동일)



##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 043-719-7165)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확진환자 관리, 매개모기 집중방제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Dengue, Zika바이러스 감염증 등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유입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개체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으므로 유입환자 및 매개체 관리가 필요합니다.
- 2018년 7월부터 서울 등 유입환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Dengue, Zika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매개체 감시 및 관리를 먼저 시행하고, 2019년부터 감시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감시체계 시범운영 및 확대 로드맵

- ① '18년 : Dengue, Zika바이러스 감염증 감시체계 시범운영 (10개 지자체 시행)
- ② '19년 : Dengue, Zika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감시체계 확대 (20개 지자체 시행)
- ③ '20년 : 황열, 웨스트나일열 시범운영 (10개 지자체 시행)  
Dengue, Zika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감시체계 지속 운영 (20개 지자체 시행)
- ④ '21년 : Dengue, Zika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야열, 황열, 웨스트나일열 감시체계 확대 운영 (30개 지자체 시행)

- 효율적인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전파 예방 및 토착화 방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의 감시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국내 유입사례 증가 및 매개체가 국내 서식하고 있어 국내 전파 및 토착화 방지를 위한 사업실시
- 주요내용 ① 효율적인 환자관리 강화(확진환자 관리 및 감시, 교육 및 홍보)  
② 해외유입 감염병 관련 매개체 감시 및 방제 제고
- 시행일 2018년 7월 4주

# 보건복지부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 044-202-3556)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시간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 추가적으로 6,000명을 더 채용하여,
  - \* 국비지원 보조교사 : 영아반 1만9,000명, 유아반 1만명
  - 총 3만5,000명의 보조교사가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도와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보조교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휴게시간 대체 근무 시 보조교사의 업무 전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확대 내용

- 추진배경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보육교사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
- 주요내용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원을 위해 보조교사 6천명 확대 배치
  - 지원 어린이집 확대(민간·가정 → 모든 유형) 및 업무범위 조정 등
- 시행일 2018년 7월(보조교사 6천명 단계적 배치)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8)

서민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보다 공평하게 개편됩니다.

### 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 듭니다.

종 전	이 후
연소득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보험료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보험료(13,100원) 납부, 1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li> <li>평가소득보험료 폐지,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를 경우 인상분 전액 감액 (~2022년 6월)</li> </ul>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에 보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공제제도 도입, 재산 과표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공제 후 보험료 부과</li> </ul>
15년 미만 모든자동차에 보험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천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노후자동차, 생계형 (승합차·화물차·특수차) 자동차 보험료 면제</li> <li>4천만원 미만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 보험료 30% 감면</li> </ul>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보건복지부

### ②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느슨하여 부모 등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써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 전	이 후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간 4,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연 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 시 제외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하면서 연소득(과세기준) 1천만원 초과 시 제외 (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에도 기준과 같이 제외)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외에도 형제·자매까지 광범위하게 피부양자 인정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 제외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③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집니다.

종 전	이 후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보수(월급) 외 연간 3,4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
(지역가입자)	소득 상위 2%(연소득 3,860만원, 필요경비율 90% 시 약 3억 8,000만원 초과), 재산 상위 3%(재산 과표 5억 9,700만원, 시가 약 12억원 초과) 보험료 인상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 2018년도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개요

- **추진배경**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고소득 가입자·피부양자 적정 부담
- **주요내용**
  - ①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서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
  - ②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③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 **시행일** 2018년 7월

## 보건복지부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 044-202-2667)

7.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 지금까지는 입원실 중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1~3인실(상급병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 이에 중증입원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없어서 원치 않게 고가의 1~3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7.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3인실 입원 환자분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부담 완화

- ▣ '19년에는 감염 등으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까지 1인실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줄어

**상급병실(1~3인실)  
보험적용  
단계적 확대**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상급병실 입원료 부담 완화
-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1만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5만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현행 20만9,960원)

- ▣ 2014년 7월 약 2배 인상된 이후 기초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정도 인상되었으나,
  - 큰 폭의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중증장애인가구의 빈곤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18.3.27.)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 **추진배경**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 **주요내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20만9,960원 → 25만원)
- **시행일** 2018년 9월

## 보건복지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044-202-3303~4

2018년 8월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지 발급을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까지 확대합니다.

- ▣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7년 4월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상지절단 1급 장애까지 확대되었으나,
  - 이와 비슷하게 족동운전을 하거나 출입문 개폐가 어려운 장애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일부개정('18.8.시행 예정)

### 보행상 장애 기준 확대

- **추진배경** 양팔이 절단된 상지절단 1급과 유사하게 족동운전, 출입문 개폐가 어려운 "상지관절 1급"과 "상지기능 1급"에 대한 보행상 장애 인정 필요
- **주요내용**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상지 절단 1급 → 상지 절단·관절·기능 1급)
- **시행일** 2018년 8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를 추진합니다.

▣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본인일부 부담금을 100분의 50을 감경하였습니다.

- 2018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차등 적용합니다.

\* 중위소득 50% : 개별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 값의 50%

\*\* 건강보험료 순위 50% : 개별 보험료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50%) 위치한 보험료의 값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 장기요양 본인 부담금 감경대상 확대계획

- **추진배경** 국정과제 「43-3.치매국가책임제」의 세부과제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확대
- **주요내용** ① 보험료 순위 25%이하 : (현행)50% 감경 → (변경) 60% 감경  
② 보험료 순위 25%초과 ~ 50%이하 : (현행) 감경 없음 → (변경) 40% 감경
- **시행일** 2018년 7월 1일(18.8월 이용급여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

# 소득하위 90%이하 만6세 미만(최대 72개월) 아동에게 '18. 9월부터 월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825)

'18.9월부터 만6세미만 아동(최대 72개월)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급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왔으나, 2018.09월부터 추가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2018년도 아동수당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주요내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0 ~ 5세\* 아동(6세 생일 전월 까지 최대 72개월)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선정기준액	월 1,170만원	월 1,436만원	월 1,702만원	월 1,968만원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원방식** 현금입금 원칙(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 상품권지급 가능)
- **시행일** 2018년 9월('18.6.20일 사전 신청 접수시작)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1)

'17년 생후 6개월~만 5세 미만(219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18년 9월부터 초등학생까지(563만명) 확대합니다.

-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해 학령기 아동의 건강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향후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료 지원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개요

- **추진배경** 학령기 아동 등에 대한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
- **주요내용**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인 10~12월 사이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 ('17년)생후 6개월~만 5세 미만  
→ ('18년)생후 6개월 ~ 초등학생(초등학생 + 어린이집, 유치원생)  
\* 생후 6개월 ~ 만 5세 미만(238만 명), 어린이집·유치원생(48만 명), 초등학생(277만 명)
- **시행일** 2018년 9월 11일\*  
\* 초회 접종으로 기초 2회 접종하는 대상자의 경우 해당되며, 1회 접종자는 10월 2일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044-202-2601)

1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아동의 초기 충치 치료 부담이 높았었습니다.
- ▣ 이에 12세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아동의 충치 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추진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 주요내용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2018년 11월 예정

##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044-202-3672)

'18년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계획입니다.

-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4.7월 도입되었고,
  -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하여 왔습니다.
-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14.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기초연금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 기초연금 인상 계획(안)

- **추진배경**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48.8%로, OECD 평균인 12.1%의 약 4배 수준
- **주요내용** ① '18.9월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지급  
② '21년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추진
- **시행일** 2018년 9월

# 보건복지부

##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 044-202-3531)

9월 20일부터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됩니다.

- ▣ 그동안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왔지만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 취약계층 치매어르신들은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치매어르신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후견인은 치매어르신에게 통장관리부터 의료행위의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치매어르신의 후견인 역할을 맡김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실시 계획

- 추진배경 치매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의 의사결정 지원
- 주요내용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 ①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를 위해 지자체 장이 후견심판 청구
  - ② 지자체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심판 청구
  - ③ 국가와 지자체는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시행일 2018년 9월 20일

## 의약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43-719-3712)

의약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 모든 의약품의 제품 용기나 포장등에 제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17.12에는 치약, 구충청량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등 의약품에 대하여 표시 기재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 '18.10에는 생리대, 마스크등의 지면류를 포함시켜 의약품 전체품목에 대하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 이에 따라 의약품의 제품 성분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품목의 구매 및 사용시 전성분 확인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의약품 전성분 표시 기재 전면 시행

- 추진배경 모든 의약품 전성분 표시로 소비자 알권리 강화
- 주요내용 생리대, 마스크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전 성분 명칭 기재
- 시행일 2018년 10월 25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휴대용 공기·산소’ 의약외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 043-719-3710)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2018년 11월 1일부터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2호 카목에 해당

- 지금까지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경우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1일부터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허가·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위해평가 및 수거·검사를 통해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며, 약사법상의 표시제도를 적용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합니다.

### “휴대용 공기·산소” 관리 추진계획

- 추진배경    의약외품 신규 지정을 통해 소비자 건강보호
- 주요내용    ① “휴대용 공기·산소”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  
                   ② 허가·심사시 안전성, 유효성 평가자료 제출범위 규정
- 시행일      2018년 11월 1일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73)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舊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이하 정보원)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입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 \* ①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 ②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2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 지금까지 환자가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를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외국허가사항, 사업자등록번호 등 제출서류를 직접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제부터 외국허가현황은 정보원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는 제출하지 않도록,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시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명확한 절차 마련
- **주요내용** 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서류 간소화
  - 현행 : 환자 서류준비\* →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신청(지방청) → 표준통관예정보고(협회) → 수입·통관  
\* 제출서류 : 진단서, 제품 설명자료, 외국허가현황, 사업자등록번호
  - 개정 : 환자 서류준비(간소화)\* → 수입요건면제 확인(정보원) → 수입·통관  
\* 제출서류 : 진단서, 제품정보(기타 서류는 정보원에서 직접 확인)
- **시행일** 2018년 7월

##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 02-2110-1434)

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가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되어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참고**

방통위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안」 및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 수립

### 공익채널·장애인 복지채널 제도개선

- **추진배경** 공익채널 선정분야 확대 및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 연장
- **주요내용** ① 공익채널 공익성 방송분야가 '교육지원'에서 '교육 및 지역'으로 확대  
②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시행일** 2018년 7월

# 05

## 공공안전 및 질서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관세청  
경찰청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경찰청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Before

그 동안 자동차 및 원도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습니다.



After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2 경찰청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Before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 부과



After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부과



##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 044-205-4188)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초지정 3년/연장 1~4년이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18.6.5)으로 최초지정 5년/연장 1~7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방재신기술 지정업체를 위해 방재신기술 보호를 최초지정 받은 날로부터 3년, 기간 연장 후 1~4년 동안 받을 수 있으나,

- 방재신기술은 공사와 관련된 기술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지정 후 입찰, 설계반영, 시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 또한 발주자의 책임부담 및 기술의 신뢰성 등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신기술의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신기술 지정을 받아도 보호기간 안에 활용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에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을 확대하여 방재신기술 실용화 촉진 및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 추진배경 방재신기술 실용화 촉진 및 지정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주요내용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 최초지정 3년 → 5년, 연장 1~4년 → 1~7년
- 시행일 2018년 6월 5일

##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 044-205-5168)

재해저감 검토기능 강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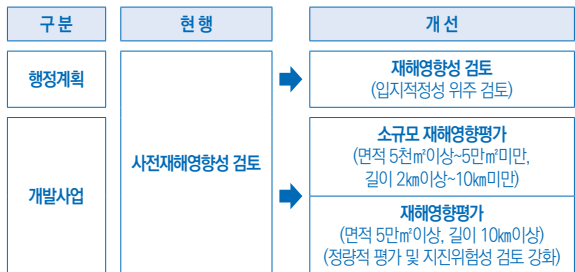
- 지금까지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되어 행정계획은 과도한 검토, 개발사업은 심층적·정량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5천㎡이상 ~ 5만㎡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하여 검토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면적5만㎡이상)은 정량적 검토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재해영향 평가제도

• 추진배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내실화

• 주요내용



• 시행일 2018년 10월 25일

##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2, 6409)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하였으나, 7월 17일부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선고 포함)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 하게 됩니다.

\* (현행) 일률적으로 취업제한 10년 → (개정) 법원이 형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에서 취업제한 명령 선고

▣ 종전('18.7.17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선고형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1~5년간 차등 적용됩니다.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확정일부터 1년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이 확대됩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이 추가되며,

\* ('18.7.17.이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기관·단체 기관 추가

\* ('18.9.14.이후) 「지방자치법」 제144조 공공시설중 행정안전부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추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대학이 추가됩니다.

### [붙임] 종전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대상기관 현황

<b>(종전) 취업제한 대상기관</b>	유치원,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노래연습장업,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b>(종전) 신고의무 대상기관</b>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여성가족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위헌에 따른 입법공백 해소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조성 강화

• **주요내용** ① 취업제한 적용 변경  
(기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모든 성범죄 경력자  
(변경)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10년 이하) 및 종전 형 확정자(형에 따라 차등 적용)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②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기관 확대 (단위 : 개)

구분	기존 기관수	신규 추가 기관수	총계
취업제한기관	538,747	4,702	543,449
신고의무기관	351,118	507	351,625

• **시행일** 2018년 7월 17일



##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1147)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모든 급유선을 등록하여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를 강화합니다.

▣ 지금까지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 급유선 제출 규정이 없었으나,

- 사용하려는 모든 급유선을 영업등록 하도록 하여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미등록 급유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공고

### 선(기)용품 및 용역 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개정

• 추진배경 「항만운송사업법」개정과 관련 급유선 관리 강화

• 주요내용

업무구분	현행	개정안
영업등록 신설	급유선 제출 없음	사용하려는 모든 급유선 제출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 법규준수의식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28일부터 체납된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 ▣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소식>보도자료>'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 운전면허 발급 제한 계획

- 추진배경 상습 과태료 체납자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유발
- 주요내용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음
-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그 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소식>보도자료>'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 실시

- **추진배경**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교통안전 확보
- **주요내용** ①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시 범칙금 3만원 부과  
②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자동차에 탈 때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소식>보도자료>'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추진배경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교통안전 확보 필요
- 주요내용    ①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부과  
                   ②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 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하였습니다.
  - 2018년 8월 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됩니다.
- 향후 정차 및 주차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할 계획입니다.

###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 추진배경 소방차량의 접근을 통한 원활한 소방활동 보장 필요
- 주요내용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서 정차 및 주차를 금지
  - ② 정차 및 주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확대
- 시행일 2018년 8월 10일

##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주차된 차량이 제동장치의 소홀로 인해 굴러 내려와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 2018년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이에 위반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경찰청 홈페이지>소식>보도자료>’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 추진배경 경사진 곳에서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 사고 예방 필요
- 주요내용 ①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의무화  
②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미이행자에 대해 3만원의 범칙금 부과
- 시행일 2018년 9월 28일

# 06

## 국방·병무

---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국방부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시행일 : 2018년 8월(잠정)

Before

지금까지 국방부는 은행과 협약을 맺고 병사를 위한 적금상품을 개발하는 등 병사들이 저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적금상품 적립한도 月 20만원
- 우대금리 5%이상
- 비교세 혜택 없음
- 적금상품 협약 은행 2개

After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위해 적금상품 대폭 개편



- 月 40만원으로 증액
-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이상+1%p(재정지원))
- 비교세 혜택 부여
- 협약 은행 14개로 확대(국민, 기업, 신한, 우리 등)

## 2 국방부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Before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기준, 국민기대에 미흡!



After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하여,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 전면 개정





## '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 별도 표기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18년 6월부터 군 복무 중 올림픽 등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에 대한 지원 경력과 해외파병 경력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으로 별도 표기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군 복무 중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등 국가행사 및 조류독감(AI), 지진 등 발생지역에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하여 지원한 경력을 증명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 국방부는 위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 항목에 포함하도록 훈령을 개정하고, '18년 6월부터 본인의 신청서를 받아 각 군 경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에 지원한 경력을 '명예로운 경력'에 표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국방인사관리훈령

###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과 파병경력 별도표기

- **추진배경** 올림픽 등 국가행사 참석 및 지원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거나, 재해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한 경력과 해외파병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에 포함하여 별도표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인원을 추가  
② 표기를 희망하는 사람(부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군으로 제출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의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국방부 병영정책과 (☎ 02-748-5164)

장병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안정적인 상담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운용을 강화하고 상담관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는 지역적 특성만을 고려해서 특수지 근무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고, 법으로 규정된 유급 휴가와 일부 보상휴가만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2018년 7월부터는 지역적 특성과 업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지를 재선정하고, 특수지 근무자 및 20년 근속자에 대한 보상휴가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휴가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 ▣ 또한, 동일부대의 근무연한을 확대하고, 특수지와 장기 근무자에게는 차기 근무지를 선택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안정적인 상담활동 여건을 최대한 보장해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주요내용

- **추진배경**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안정적인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 **주요내용**
  - ① 특수지 확대(업무강도 등 고려요소 추가) : 121명 → 209명
  - ② 보상휴가 신설 : 특수지 반기 2일, 20년 근속자 7일
  - ③ 포상휴가 신설 : 업무유공자 연간 5일
  - ④ 동일부대 근무연한 확대 : 2~3년 → 2~5년(특수지 : 2~5년 → 2~10년)
  - ⑤ 인사교류 인센티브 신설 : 인사교류 평가배점에 반영(10~30%)
- **시행일** 2018년 5월 28일(①, ④, ⑤) : 7월 1일부 시행)

##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합격자 선발제도 마련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 02-748-5105)

'18년 군무원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할 경우 채용하지 못한 인원의 근무예정 직위를 공석으로 유지해야 함에 따라 업무공백과 인사운영상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18년부터는 공채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육·해·공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업무수행과 인력운영 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국방인사관리훈령

### 공채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주요내용

- **추진배경** 군무원 공채시험 합격자 미달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 및 업무공백과 인사운영상 불편 해소
- **주요내용**
  - ① 선발 시기 : 6급 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 ② 추가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기준
    -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면접시험 미달인원의 1.3배수  
(미달인원이 6명 이하일 경우 2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서 선발
- **시행일** 2018년 6월 30일(2018년 군무원 6급 이하 공채시험부터)

## 국군병사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청년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 금년 8월 중(목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됩니다.
- 신규 적금상품에는 ① 적립한도 증액(월 20만원 → 40만원), ② 우대금리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5% 이상 → 5% 이상+1%p), ③ 비과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 또한, 다양한 은행상품을 한 눈에 비교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소 등에서 안내 및 홍보 강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보도자료>청년병사 목돈마련 금융지원 확대

###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적금상품 개편

- **추진배경**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병사가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상품 개편
- **주요내용**
  - ① 국군병사 적금상품 협약은행 확대(2개 → 14개\*)
    -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본,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 ② 적금상품 월 적립한도 인상 : 은행별 10만원 → 20만원 (개인별 20만원 → 40만원)
    - \* 병사 1인당 연간 최대 납입한도는 480만원(40만원\*12개월)이며, 납입기한은 군 복무기간
  - ③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재정지원) 및 비과세 혜택 부여
- **시행일** 2018년 8월(잠정)
  - \* 신규 적금상품은 '18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며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비과세 혜택은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19.1.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부터 적용 예정

##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 02-748-6811)

군 수사절차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수사절차상 인권보장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18.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군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조사 시작 후 매 2시간 마다 1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그동안 변호인 참여는 군검사가 조서를 작성할 때만 가능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의자를 조사·면담하는 경우에도 변호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군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했습니다.
  - \* 임의수사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피의자 동의없이도 조사가 가능한 수사의 형태
  - 군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족 등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군인, 군무원 등 군 범죄피해자에게도 무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군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군 사법개혁을 통해 군 사법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군 수사절차 인권보장 강화 시행”게시 예정(6월말)

### 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 추진배경 군사법개혁에 따라, 수사절차상 인권강화 방안 도입
- 주요내용
  - ① 피조사자들에 대한 휴식권 보장
  - ② 군검사 면담시에도 변호인 참여권 보장 확대
  - ③ 강제수사과정에서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함.
  - ④ 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임 근거 마련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국방부 군인연금과 ☎ 02-748-6672)

제2연평해전('02.6월)에서 전사한 6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를 강화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전사자'임에도 불구하고 '02년 당시 '전사'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1인당 3,000~5,000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 이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행 「군인연금법」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 계획

- 추진배경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강화
- 주요내용
  - 현행 「군인연금법」 상 '전사' 보상기준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 \* 특별법 제정('18.1.16.), 시행령 제정('18.7.17. 공포 예정)
  - ① 보상대상 : 제2연평해전 전사자 6인
  - ② 추가 보상액 : 전사자 1인당 1.4~1.8억원
- 시행일 2018년 7월 17일

##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국방부 국유재산과 ☎ 02-748-5830

군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무단사용에 대한 배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군 부대 창설·정비 시 군사적 목적 등으로 군이 불가피하게 무단으로 점유한 사·공유지로 인해 일부 국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었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정확한 무단점유 현황 및 소유자를 파악하고자 2018년 1월부터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측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9월까지 측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측량사업이 완료되면, 2018년 10월에 군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 절차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군 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

- 추진배경 군 무단점유 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무단사용에 대한 배상을 실시하여 그동안 침해받아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① 현황 및 소유자 파악을 위한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 측량사업 진행
  - ② 군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보
  - ③ 국가배상 절차 등을 소유자에게 안내
- 시행일 2018년 10월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합니다.

▣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호관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정중히 전달합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열린마당 > 보훈처소식 > 보도자료 >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계획

- **추진배경**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 말씀 (청와대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시, '17.8.14.)
-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사망 시 증정하던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로 격상하여 증정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시행('18.6.1.)



## 보훈가족 등 심리재활서비스 운영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044-202-5647)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군복무 중 신체·심리적 고통을 받은 제대군인(가족 포함)의 심리치유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심리치유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은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및 인천지청에 내방(또는 유선) 신청하시면, 상담사가 기본상담, 심리검사,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결과 중증 또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심리재활 집중센터에 내방 신청하시면, 심리전문가가 대상자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심리재활서비스 시행 계획

- **추진배경** ① 지금까지는 보훈병원을 통한 신체적 재활에 집중되어 심리치유에 대한 서비스 미제공  
② 우울증 및 불안 등으로 사회적 적응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지속적 증가
-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심리치유를 위한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18년 7월중

# 국가보훈처

## 인천보훈병원 개원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044-202-5647)

인천 및 경기도 서부지역의 취약한 보훈의료시설을 강화하여 새로운 보훈의료 인프라를 구축, 근거리의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8월 인천보훈병원을 개원합니다.

인천보훈병원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하여 지하1층~지상7층으로 130병상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총 15개 진료과를 운영하며, CT 및 MRI 등 전문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국가유공자 다빈도 질환을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중앙보훈병원 등과 연계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인천보훈병원 개원

- **추진배경** 인천 및 경기도 서부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건립 추진
- **주요내용**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국가유공자 다빈도 질환에 특성화된 진료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18년 8월말

## 응급진료비 통보기간 완화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2)

‘응급환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지연 통보한 사유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진료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통보기간을 완화합니다.

▣ 현재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 후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하여야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진료대상자가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 입원 후 3년 이내 통보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응급진료비 신청기간 확대 계획

- 추진배경 ‘응급환자’임에도 제도를 알지 못했거나 지연 통보한 사유로 진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비진료대상자 구제
- 주요내용 제도를 모르거나 지연통보로 지원받지 못하는 민원을 구제하기 위해 입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통보시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일 2018년 7월 31일

## 병무청

#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으로 민원편익 제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2018년 6월 11일부터는 기존 구비서류에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기본증명서를 포함하여 민원인이 제출하기 쉬운 구비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귀화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위해서 지방병무청장에게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 앞으로는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에 기본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기 쉬운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민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

- **추진배경** 귀화허가서 사본, 국적취득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제출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
- **주요내용**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구비서류 개선(변경)
  - (현행) 귀화허가서 사본,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또는 관보사본
  - (개선) 귀화허가서 사본,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관보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 **시행일** 2018년 6월 11일

## ‘대학원 진학사유’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제한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2)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8개 분야에서 입영연기가 제한됩니다.

- ▣ 종전에는 ‘국내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8개 분야 입영연기는 연령 제한이 없어 일부 나이 많은 사람이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여 병역이행 지연사례가 있었으나,
- ▣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 부터 28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제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대학원 진학예정’ 외 6개\* 사유는 연기 제한
    - \*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응시, 공익·국가업무 수행 중 홍보활동, 형제 동시복무, 고졸 검정고시, 공공 직업훈련원 재원, 학점 은행제 수강
  - ‘졸업예정’ 사유는 학교별 졸업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에서 연기
- ▣ 다만,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예정’ 사유 입영연기 제한은 '19. 1월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시행됩니다.

###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

- **추진배경** 병역이행 지연 방지를 위하여 입영연기 악용 우려가 있는 연기사유에 대하여 제도 개선하여 공정한 병역의무이행 유도
- **주요내용** 28세 이상자 등 입영일자 연기 제한
  - ‘대학원 진학예정’ 등 7개 사유 28세 이상 연기 제한
  - ‘졸업예정’ 사유는 학교별 졸업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 내 연기
- **시행일**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단, ‘대학원 진학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는 '19. 1월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시행

# 병무청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 적용)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7)

2018년 수의과대학 입학생부터는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수의과대학 본과1·2학년 평균성적을 반영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수의과대학 1·2학년 평균 성적을 반영하였으나,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수의사관후보생 평가와 연관성이 낮아 선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17.3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앞으로는 수의사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수의과대학 본과 1·2학년 평균성적”을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 추진배경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 개선 권고(’17.3월)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선발기준	신체등급점수 (100점)	신체등급 점수(100점)
	수능성적(50점) ◀ 폐지	본과 1·2학년 평균성적(100점)
	예과 1·2학년 평균성적(50점) ◀ 폐지	
선발시기	본과 1학년	본과3학년
적용대상	2017.12.31.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자	2018.1.1.이후 수의과대학 입학자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병무청 산업지원과 (☎ 042-481-2771)

승선근무예비역의 생활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선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종전에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소집된 날로부터 승선근무 외에 영리활동 및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었으나,
  - ▣ 2018년 6월부터는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동안 영리 활동 및 겸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이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승선근무기간 : 승선일부터 하선일까지, 유급휴가기간, 업무상 질병 등 휴직기간

### 승선근무예비역 영리활동 및 겸직 금지 규정 개선

- **추진배경**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를 마칠 때까지 영리활동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어, 승선대기기간(최장 2년) 동안의 생활안정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제7항 단서 및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제1항제5호 신설
  - (현행)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복무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개선)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선원법」에 따른 선원을 제외한 영리활동 및 겸직 가능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병무청

# 6개월 미만 국외체재자로서 통지된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 신청

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12)

입영통지서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6개월 미만으로 체재하면서 정해진 입영일자에 입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그동안은 입영일자가 정해진 병역의무자가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외체재 기간에 관계없이 병무청에서 입영일자를 연기처리 하였으나
- ▣ 앞으로는 6개월미만 국외체재(예정)자로서 통지된 입영일자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원을 신청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6개월 이상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자동으로 입영 연기처리 됩니다.

### 6개월 미만 국외 체재자 연기제도 개선

- **추진배경** 국외체재 기간에 관계없는 입영연기를 개선하여 병역이행 지원을 방지
- **주요내용** 국외체재자 국외 입영연기
  - (6개월 이상 체재자) 국외 체재기간 확인, 입영 연기
  - (6개월 미만 체재자) '출국사유'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통하여 연기 처리
- **시행일**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 제고를 위한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 02-2079-6316)

기술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 도전기술개발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18년, 2가지 방식으로 미래 도전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18.9~10월 과제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창의·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사이버기술사관을 대상으로 과제공모를 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 미국 국방고등기술원(DARPA)\*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추진합니다.

\*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 생물, 국방과학, 정보혁신 등 6개 사무소로 구성, 외부의 과제 제안자를 PM(Project Manager)으로 고용하여 소요에 기반을 두지 않는 연구 수행

▣ '19년 이후 법률 제·개정과 연계하여 미래도전기술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가칭)「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 「방위사업법」·「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 등

### 미래 도전기술개발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창의·도전적 아이디어의 국방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과제경연대회 및 국방고등기술원 내부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자 선발 후 연구개발 추진  
② '1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 '19년 이후 확대 추진 예정
- 시행일 2018년 9월

## 방위사업청

#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팀 (☎ 02-2079-5510)

수주량 감소, 유가하락에 따른 해양플랜트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조선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8년 3분기부터 함정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경우, 100%의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여 고액의 보증부담이 조선소에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 '18년 9월부터는 함정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하고 기성대가에 대해서는 50%의 보증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조선소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또한, 방위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착·중도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함정의 적기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방기술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복잡무기체계인 함정에 대해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함정사업의 기술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방위사업청 조선업·지역경제 살리기 팔걸어

### 함정사업 제도개선 추진 계획

- **추진배경** 방산조선소 부담 완화 등을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 **주요내용** ① 함정사업에 기성제도 적용하고, 기성대가의 50% 보증서 제출  
 ② 방위사업과 무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착·중도금 지급 가능  
 ③ 함정사업 기술지원에 관한 국방기술품질원 위탁근거 마련
- **시행일** ① 2018년 9월 ② 2018년 7월 ③ 2018년 6월

## 국방벤처기업의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 제고를 위한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 02-2079-6443)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방산분야 진입 이후 독자적 기술개발 능력을 함양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 이는 중소·벤처기업이 고난이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완료 후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 업체, 군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국방벤처 지원사업은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군수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 2년간 3억원까지 지원하였으나,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3년간 5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술 난이도가 높은 만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제별로 기술자문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추진계획

- 추진배경 국방벤처기업이 방산분야 진입 이후 지속성장 및 고수준 기술개발 능력 함양 등을 위한 후속지원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체계기업, 군 등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기술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Top-Down 방식으로 발굴
  - ② 대학, 정부출연기관, 체계기업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과제 발굴 및 진행과제에 대한 기술자문 지원
  - ③ 수출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④ 과제당 최대 3년, 5억원 한도로 지원
- 시행일 2018년 6월

## 방위사업청

#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 02-2079-6412)

업체 주도의 방산수출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의 경우 선정된 무기체계 개조개발 과제당 총사업비의 최대 75% 이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을 하였습니다.
  - 대형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참여 촉진 등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이번 정부지원의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용 개조개발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중견기업 60%, 대기업 50% 이내에서 지원

### 수출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대형 무기체계 개조개발 활성화 등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 정부지원금 확대
- **주요내용** 선정된 과제당 정부지원금을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확대
- **시행일** 2018년 7월

# 07

## 일반공공행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외교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일 : 2018년 8월

Before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 예정!

After



## 2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시행일 : 2018년 9월

Before

'16년 7월 서비스 개통 후  
"문서24 서비스" 6개 업무 분야에 대해 우선 실시



· 문서 24 서비스 :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After

2018년 9월부터 "문서 24 서비스",  
정부 업무 전 분야로 확대



· 일방향 (국민 → 행정기관) 공문서 제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문서유통 체계 개선 예정

### 3 고용노동부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됨



68시간

↑  
근로  
시간

After

노동자가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으로 제한



40시간

↓  
근로  
시간

52시간

↓  
근로  
시간

다만, '주52시간' 제도가 산업현장에 원활히  
안착되도록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 4 고용노동부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Before

신설

After

'18년 5월 29일부터  
연간 3일(1일 유급, 2일 무급)  
난임치료휴가 가능



- 난임치료휴가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5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Before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필요한 출근율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 제외



- 출근율은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After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 6 고용노동부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Before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



1년 이상

After

법 개정으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허용 의무 발생



6개월 이상



## 7 고용노동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Before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150만원, 둘째 이상 자녀 200만원으로 차등지원



After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



## 8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Before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 채용해야 지원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1인기준) 667만원 → 900만원으로 인상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9 고용노동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Before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 할 수 있는 2년형이 있었으며,

2년  
1600만원



After

'18년 6월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년  
3천만원



## 10 특허청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18년 5월 28일

Before

청년창업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2018년 5월 28일부터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After



## 11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시행일 : 2018년 7월 17일

Before

점주는 거래중단위험 때문에  
본사의 불공정행위 신고 기피



After

대리점법 및 가맹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 포상금**



##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시행일 : 2018년 5월 1일

Before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경우 결정의 방법  
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명확히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After





## 청년 고용 친화형 ICT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5)

과기정통부는 ICT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고용 친화형 R&D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8년 6월 이후 신규로 공고하는 ICT R&D 사업부터 수행기업은 정부지원 출연금 5억원당 1명씩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 채용하도록 ICT R&D 행정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ICT R&D 행정규정 개정(안) 행정예고(643번)

아울러, 금년부터 수행하는 ICT R&D 과제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과제 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 창의·도전적 사업의 결과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여,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우수성 중심의 정성평가를 통해 연구자의 혁신적 과제수행을 유도하겠습니다.

\* (18 하) 그랜트 R&D 사업 시범적용 → (19) 고위험·도전적 R&D 등 타 사업 확대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MSIT PR)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I-KOREA 4.0 : ICT R&D 혁신전략 발표'(596번)

### 청년고용 친화형 R&D 제도 시행 및 성공·실패 판정 폐지 (안)

- 추진배경** 정부 정책('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R&D를 통한 청년 고용을 유도하고,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 추진
- 주요내용** ① ICT R&D사업 참여기업은 출연금 5억원당 1명씩 청년인력 신규 채용  
② 창의·도전적 사업 결과 평가 시 성공·실패 판정 폐지
- 시행일** 2018년 5월 31일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외교부 여권과 정보관리팀(☎ 02-2002-0173) 법무팀(☎02-2002-0138)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입니다.

▣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2018년도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 추진배경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을 통해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여권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  
② 사전 알림을 통해 적시에 여권 갱신 용이
- 시행일 2018년 8월(개인정보 관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중)

## 문서24 서비스 확대 및 양방향 유통체계 마련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02-2100-4469)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서24” 서비스에 대해 2018년 9월부터 정부업무 전 분야로 확대하고, 민관 간 양방향 문서유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16년 7월 서비스 개통 후 6개 업무 분야\*에 대해 우선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18.5월 현재)

■ 서비스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 9월부터는 국민이 모든 업무 분야에 대해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또한, 현재 단방향(국민 → 행정기관) 공문서 제출 서비스를 양방향(국민 ↔ 행정기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 제공할 계획입니다.

### 문서24 서비스 고도화 계획

- **추진배경** 민·관 간 전자문서를 통한 소통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서비스 분야 확대(6개\* 분야('18.5월 현재) → 정부업무 전 분야)  
\* 국민과의 대량 문서유통이 발생하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일자리, 행정처분 등
  - ②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민과 정부기관 간 온라인 양방향 문서소통 체계 구축
- **시행일** 2018년 9월

# 고용노동부

##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202-7546)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18.7.1.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됩니다.

\* (적용시기) ▲300인 이상 : '18.7.1(특례제외 업종은 '19.7.1.), ▲50~299인 : '20.1.1., ▲5~49인 : '21.7.1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됩니다.

\* (개정 전) 46시간 = 40시간(법정)+6시간(연장) ⇒ (개정 후) 40시간 = 35시간 + 5시간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18.7.1) 되고, 유지업종도 특례도입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18.9.1)해야 합니다.

\* 특례유지 5개 업종 : ①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

▣ 특례업종은 연장근로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 노동자 건강과 안전은 물론 국민 생명까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 이제부터는 특례제외 21개 업종도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받게 되며, 특례가 유지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또는 휴게시간 위반 적발시 교대제 개편, 인력 총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률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 \* 3개월 + 필요시 3개월 연장

### 근로기준법 개정안

- 추진배경 장시간 관행 개선을 통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생활 균형
- 주요내용
  - ① 1주 최대 노동시간을 연장·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으로 제한
  - ② 18세 미만자 1주 최대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6시간 단축
  - ③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규모별 단계적용
  - ▲특례도입사업장의 11시간 연속휴게시간 부여는 '18.9.1

##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2018.5.29.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됩니다.

- ▣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요구할 경우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
- ▣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도 포함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제도 신설

- 추진배경    난임치료 보장을 통한 저출산 해소,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주요내용    ①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② 노동자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③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2018.5.29.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법 개정 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따질 때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였으나,
  - 법 개정 후에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이 2018.5.29. 이후일 경우 적용하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경우 그 시작일이 2018.5.29. 이후이면 적용합니다.
  -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육아휴직 기간 1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출근으로 인정

- 추진배경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 직장 복귀 후 연차휴가 보장
- 주요내용 ①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②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그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면 인정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2018.5.29.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법 개정 전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만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법 개정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제도 개선 내용은 2018.5.29.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다만, 금년 시행령과 별개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 **추진배경**      계약기간이 짧은 비정규직 또는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 보장
- **주요내용**      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보장  
                          ②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거부시 벌금 500만원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용자가 확대됩니다.

- 용자대상자의 소득요건을 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에서 '4인가구' 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자녀학자금 인정요건을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서 대학교 재학 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임금체불생계비의 용자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학자금의 용자 한도를 자녀 1명당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제외)의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다양화하고,
  - 용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우선하여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용자확대

- 추진배경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 주요내용
  - ① 용자대상 소득요건 완화(중위소득 3인가구 기준 → 4인가구)
  - ② 용자 인정요건 확대(자녀학자금 : 고등학교생 → 고등학교생 또는 대학생)
  - ③ 용자한도액 확대  
(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 → 2,000만원)  
(자녀학자금 : 자녀 1명당 500만원 → 700만원)
  - ④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 다양화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3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선택)
  - ⑤ 용자재원 부족 시 우선하여 용자
- 시행일 2018년 5월 23일

## 고용노동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2018.7.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현재 상한액 150만원,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200만원)

⇒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2018.7.1. 이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추진배경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인센티브 강화로 아빠의 육아참여 촉진
- 주요내용   ①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②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이 2018.7.1. 이후이면 그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05)

###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현재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이하(200㎡이하 대수선) 공사

- 2018.7.1.부터는 공사금액과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영세업자의 경업난 등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증가
- **주요내용** ①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②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044-202-7416)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합니다.

- ▣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 ▣ 2018년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청년을 추가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 ① 지원업종 확대 :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② 지원방식 개편 : 3명이상 고용시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30인미만 1명고용, 30~99인 2명고용, 100인이상 3명고용시부터 지원)
  - ③ 지원금액 인상 : 1인기준 667만원 → 900만원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7)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집니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조치를 할 책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됩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지 않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 2018년 하반기 변경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

- **추진배경**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의 감소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 **주요내용** 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퇴직금 감소시 중간정산 허용  
②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및 위반시 제재
- **시행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 2018년 6월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및 위반시 제재 : 2018년 7월 1일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 2018.7.1.부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①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③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요건완화) 다만,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③육아휴직 등 사용 노동자 30일 계속 고용' 요건의 예외로 인정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2018.7.1. 이후에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부터 적용합니다.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 추진배경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해당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육아휴직 등을 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 요건 중 "육아휴직 등을 한 노동자의 사업장 복귀(30일 이상 계속 고용)"에 대한 예외 로 인정  
② '18.7.1.이후에 피보험자인 노동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7)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금까지는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하면서 교육 미실시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으나
  - 2018.5.29.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의 이해·장애인 고용 촉진 제도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추진배경**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강화
- **주요내용**
  - ① 교육횟수 :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 ②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제도
  - ③ 교육대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 ④ 교육방법 :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는 교육자료 배포·게시 등의 간이교육 인정
  - ⑤ 과태료 : 교육 실시 의무 및 교육자료 3년 보관 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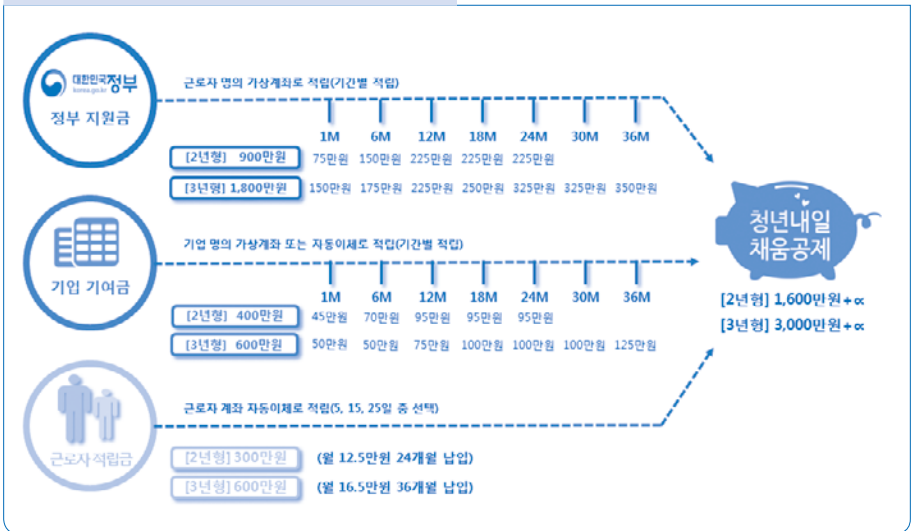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38)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 2년형·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천만원  
목돈 생겨**

- **추진배경**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및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3년간 근속하면서 600만원 납입 시, 정부(1,800만원)과 기업(600만원)이 보태어, 3천만원의 목돈 마련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청년층의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4)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400만원에서 대폭 늘린 8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고
  - 선진국 취업자는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금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 약 1년간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매칭을 통해 상대적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K-Move 트랙 II를 신설합니다.

### 해외취업지원 사업 확대 시행

- 추진배경 청년층에 대한 양질의 해외일자리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진출가능성이 높은 신흥국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확대

- 지원대상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 주요내용 ①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기존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의 지원금액 및 기간을 확대하여 해외취업 청년의 조기정착 및 장기근속 지원

구분	현행		개선 후		
	(취업 후) 1개월 후	6개월 후	1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신흥국	200	200	300	200	300
선진국	100	100	200	100	100

- ② K-Move 트랙 II : 국내·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90% 이상) 취업연봉기준을 상향조정 (연봉 3,200만원)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을 위한 약 1년간의 연수과정 개설(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연수비용의 10% 연수생 자부담)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인사혁신처 소청행정과 (☎ 044-201-8653)

공무원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 진술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앞으로는 민간위원이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전문적 진단과 해결이 필요한 고충의 해결역량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 또한,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하여 청구인의 진술권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새소식>보도자료>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

###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 개선

- **추진배경** 위법·부당한 인사 행위 근절을 위해 고충심사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①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확대
    - (현행) 소속 상위계급 공무원 5~7명으로 구성
    - (개정) 민간위원(퇴직공무원, 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노무사) 1/3이상 참여 의무화
  - ② 청구인 진술권 강화
    - (현행) 필요시 진술기회 부여 → (개정) 반드시 부여(서면 또는 출석)
- **시행일** 2018년 8월 15일

# 특허청

##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시정권고 실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5842)

2018년 7월 18일부터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그동안 대기업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사업제안, 공모 등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중소·벤처기업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 습니다.
- 특허청은 이러한 피해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 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 하도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더 나아가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해서 특허청이 행정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 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입증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소식알림>보도자료>특허청, 아이디어와 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 및 시정권고

### 아이디어·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 시정권고 실시

- 추진배경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무단 사용 금지
- 주요내용 ① 사업제안, 공모전 등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무단사용 금지  
②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해 행정조사, 시정권고 실시
- 시행일 2018년 7월



##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 042-481-5961)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2018년 5월 28일부터 청년창업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청년창업자,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은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2018년 5월부터 지원대상에 추가되어 공익변리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등록 서류작성, 심판·심결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청년창업자,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에게 새로운 사회·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지재권 분야에서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홈페이지)>센터소개>지원대상

###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분야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에 청년창업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추가
- **시행일** 2018년 5월 28일

##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 02-2110-1385)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대상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해 주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18.9월)합니다.

※ 제도 시범운영 및 보완(18년 하반기), 제도 본격시행(18.12~)

- 지금까지는 신산업·신제품의 시장 진출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 법령·제도 질의 화신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 방송통신 신산업 관련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 허가 필요여부 등에 대해 신속 확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분야 신규 서비스 시장진출이 보다 편리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송통신서비스 규제 신속확인제도

- **추진배경**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대상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해 주는 창구 부재
- **주요내용**
  - ①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대상 여부 및 허가 등 필요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
  - ② 방송통신서비스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훈령) 제정
- **시행일** 2018년 9월

##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632)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여도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합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추진배경**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 방지
- **주요내용**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
- **시행일** 2018년 7월 17일

##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 044-200-4632)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범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 지금까지는 가맹점사업자의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여도 별도의 제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 앞으로는 이러한 보복조치를 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또한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추진배경**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 **주요내용** ①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  
② 보복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 **시행일** 2018년 7월 17일

##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2) 가맹거래과(☎ 044-200-4639)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신고자·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 그간 대리점주 및 가맹점주들은 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 중단의 위험 등으로 인해 신고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 ▣ 이에, 대리점주 및 가맹점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대리점 및 가맹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 2018년 7월 17일부터,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서 증거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보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신고포상금제 도입

- 추진배경 대리점 및 가맹거래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적극적 신고문화 정착
- 주요내용
  - ① 지급대상 :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자
  - ② 지급금액 : 위반행위 및 제출된 증거의 경중에 따라 최고 5억원 지급
- 시행일 2018년 7월 17일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95)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됩니다.

- ▣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하도급업체는 공정거래 조정원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 <공정위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개정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확대

- **추진배경** 노무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
- **주요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이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됨
- **시행일** 2018년 7월 17일

##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경영정보 요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044-200-4595)

앞으로는,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는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어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원가 등 경영 정보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이는 궁극적으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소식>보도

개정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 추진배경 하도급업체 협상력 제고를 통한 힘의 불균형 해소
- 주요내용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경영 정보 요구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
- 시행일 2018년 7월 17일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 044-200-4614

하반기부터 개정된 대규모 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먼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트·백화점 등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임차료의 100% 또는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보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마트·백화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억원, 임원에게는 1천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에게는 5백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트·백화점 등은 새롭게 시행되는 법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잘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백화점·마트 입점업체, 질병 치료 위한 영업시간 단축 가능해진다”.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추진배경**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중소기업인 권익 보호
- **주요내용**    ①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해당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② 서면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① 2018년 9월 14일    ② 2018년 10월 18일



## 절차적 투명성 및 참여 보장을 위한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 044-200-4123)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고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재신고사건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3인위원이 모두 공무원이었으나 이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참고인 신문과 관련하여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예시하여 명확화하고 심의 중에 필요한 경우 즉석에서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뉴스 > 보도 > 사건절차규칙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추진배경**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사건절차규칙 개정 필요성
- **주요내용** 재신고사건 심사위원회의 민간 중심 개편, 조사·심의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참고인 조항 정비 및 즉석 참고인 채택 규정 등
- **시행일** 2018년 5월 18일

##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44-200-4364)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회생기업의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사전신고의 경우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주식취득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인가 결정일은 이를 예측하기 어렵고, 주식 취득일이 인가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로 짧게 설정되므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사후 신고로 전환할 경우 신고의무 회사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므로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공정위소식>보도>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 대규모회사의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 전환

- 추진배경 대규모회사가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하여 해당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
- 주요내용 사전신고 대상에서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
- 시행일 2018년 5월 31일

## 수익형 부동산·렌탈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425)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유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익형 부동산 및 렌탈 제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개정 중요정보고시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2018. 7. 1.).

- ▣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고,
- ▣ 렌탈 사업자들은 렌탈 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렌탈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 > 공정위 소식 > 보도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개정

### 수익형 부동산·렌탈 제품의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중요정보고시 개정

- 추진배경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매선택에 필요한 중요 정보 제공
- 주요내용
  - ①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
  - ② 렌탈사업자는 렌탈 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광고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 044-200-7812)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입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경우 결정의 방법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식으로 명확히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 행정심판위원장은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기존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절차로 복귀되어 진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행정심판법, 시행령

### 2018년 행정심판 조정제도 주요 신설사항

- **추진배경**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 도모
- **주요내용**
  - ① 행정심판 조정의 개시결정 및 당사자 등에 송달절차 마련
  - ② 조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조정회의 운영근거 마련
  - ③ 조정 불성립시 심리기일의 지정
- **시행일** 2018년 5월 1일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 044-200-7752)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됩니다.

- ▣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신고는 물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 ▣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됩니다.
- ▣ 권익위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한 후, 신고자가 보호 또는 지원을 원하는 등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소식>보도·해명자료>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유출 원천 차단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주요내용 공익신고 시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처리 절차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
- 시행일 2018년 10월 18일



# 08

## 농림·해양·수산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시행일 : 2018년 9월

Before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11월



After

올해는 9월에 조기 지급하여  
추석 명절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9월



## 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시행일 : 2018년 6월

Before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After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의 방문 신청 이외에  
온라인신청(정부24)도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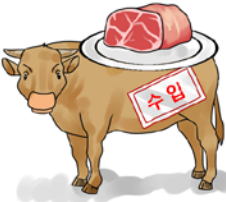
### 3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시행일 : 2018년 12월 28일

Before

'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



After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4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Before

해운불황에 따른 경영악화로  
투자감소 및 자금부족 악순환



After

해운사업 안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전담 지원기관 한국해양진흥공사 '18년 7월 출범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5 산림청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시행일 : 2018년 8월 22일

Before

지금까지는 유아숲체험원의 규모가 1만㎡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After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6~9)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하여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60만원입니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직불금 신청

###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조기 지급

- 추진배경 직불금 조기 지급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쌀고정)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농지 및 초지
  - ② 지급단가 : 쌀고정직불금 평균 100만원/ha, 밭직불금 평균 50만원/ha,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60만원/ha
  - ③ 지급시기 : '18.9월 중
- 시행일 2018년 9월

##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9)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입니다.
  -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18~'19년은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또한 농가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과 예방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가축질병보험

### 가축치료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가축방역 강화
- **주요내용**
  - ① 시범사업 기간 : 2018~2024년(7년간)
  - ②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농협중앙회
  - ③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  
(18년 예산 17억 : 보험료 지원 15억, 효과분석 : 2억)
  - ④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 질병치료보험료 지원 및 정기적인 농가 예방·예찰 활동 지원
- **시행일** 2018년 8월  
\*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보험요율, 보장범위 등 세부 보장내용 검토 중

##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6)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에 온라인신청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등을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정부24)도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농지법령

###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관련 고시 제정

- **추진배경**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을 규정
- **주요내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를 제정하여 방문 외에도 정부24(www.gov.kr)를 이용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가능
- **시행일** 2018년 6월

## 농림축산식품부

#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4)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행정예고

### 명예조합원 (준조합원)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은퇴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준조합원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안 마련
  - 자격 : 연령 및 조합가입기간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자
    - \* 조합은 연령기준 70세 이상, 조합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권리 : 준조합원의 기본 권리 + 교육·지원사업, 복지사업 및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 지원
- **시행일** 2018년 6월 11일

##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18.12.2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 (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8호)

###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 전면 실시

- 추진배경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주요내용
  -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적용
    - 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동등한 의무사항 부과
  - ② 의무 적용 대상 영업
    - 수입·유통 :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축서판매가공업
    - 조리·판매 : 영업면적 700㎡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 통신판매업
- 시행일 2018년 12월 28일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18년 7월 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으로 GPS 장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추가)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 기존등록대상 :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전염병예방법)

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및 시행규칙 별표2의2(시설출입차량)

###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주요내용**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5)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권익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농약의 판매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 농약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 11월 1일부터는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 또한 그동안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나,
  - 9월 6일부터는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은 연1회 이상 교육 이수 의무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농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 농약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 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 추진배경 농업인의 권익 확대를 위해 농약의 실제 가격 표시 실시 및 위탁업무의 부실 수행 등 개선을 위한 직접 수행 제도 대신
- 주요내용 ①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②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민간위탁을 농촌진흥청 직접수행(농협 등 농약 관련 4개 단체 → 농촌진흥청)
- 시행일 ① 농약가격표시제 : 2018년 11월 1일  
② 농약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 2018년 9월 6일

# 해양수산부

##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 (☎ 051-400-4381)

국민과 기업의 안전하고 쾌적한 선박운항 지원을 위해 선박운항지수 서비스 항로 및 마리나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선박운항지수는 현재 13개 항로\*와 3개 마리나 지역(수영, 전곡, 왕산)에 대해 서비스되고 있으나,
  - \* 13개 항로 : 인천-백령, 인천-연평, 군산-어청, 목포-제주, 완도-제주, 녹동-제주, 포항-울릉, 강릉-울릉, 목호-울릉, 부산-제주, 부산-대마도, 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 2018년 11월부터는 여객 수요가 많은 목포~홍도, 여수~거문도, 통영~육지도, 인천~덕적도 등 4개 항로에 대한 선박운항지수를 추가로 서비스하고,
- 3개 마리나 지역에 서비스되고 있는 선박운항지수도 목포, 통영, 여수(소호) 3개 마리나를 추가 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해양정보포털>해양생활>선박운항지수

###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안전하고 쾌적한 선박운항지수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 ① 항로별 선박운항지수 서비스 확대 (서비스 항로 12개 → 16개)
  - ② 마리나 선박운항지수 서비스 제공 추가 (목포, 통영, 여수, 서비스 지역 3개 → 6개)
- **시행일** 2018년 11월 예정

##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지원센터 확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044-200-5483~4)

수산물 수출업체를 현지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센터’를 2018년 하반기부터 아세안·미국 동부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중국(상해·청도·북경), 미국(LA), 일본(동경), 대만(가오슝), 베트남(호치민) 등 총 7개소의 지원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 2018년 하반기 부터는 태국, 말레이시아와 미국 뉴저지에 수출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해당 권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법률, 통역·통관지원 등 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입주기업은 입주보증금(100만원), 통신료 등 소정의 실비만 부담하면 사무공간, 회의실, 사무기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확대 운영 계획

### 2018년도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확대 운영 계획

- **추진배경** 한국수산물 수출업체 수출판로 개척, 수출애로 해소 현지 안착 조기 유도 등을 위한 맞춤형 밀착지원 확대
- **주요내용** 수출초보기업에 대해 사무공간·회의실·사무기기 제공, 법률·통역 자문, 판로개척·통관, 홍보·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밀착 서비스 제공
- **시행일**
  - ① 미국 뉴저지 센터(2018년 6월 19일)
  - ② 태국 방콕 센터(2018년 6월 25일)
  - ③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센터(2018년 6월 26일)

\* 신규 개소 센터 정상업무 추진(7월~), 수출기업 입주(9월 예정)

# 해양수산부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044-200-5487)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를 일류 브랜드로 육성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 K·FISH 브랜드는 김, 전복, 굴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운영되어 활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 2018년 7월부터는 기존 11개 품목 외에 고등어, 바지락, 어란 등 3개 품목을 추가하여, 우리 수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수출을 확대 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K·FISH 홈페이지(www.kfish.kr)K·FISH 소개>대상품목

### 수산물 수출통합 브랜드(K·FISH) 품목 확대 항목

- **추진배경**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품목 확대(11개→14개)
  - (기존) 활넙치, 전복(활, 가공), 김(건조, 조미), 해삼(건조), 굴(냉동), 홍게살, 어묵(찜, 구이, 튀김, 어육소시지), 오징어(조미), 봉장어(필렛), 참치(통조림, 레토르트), 마른미역
  - (변경) 기존 품목 및 고등어(염장·염수장), 바지락(냉동, 가공), 어란 (염장·염수장)
- **시행일** 2018년 7월

##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8)

수산물의 실시간 수급정보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수산물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수급관련 정책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최근 수산물 수급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연근해산 수산물의 생산량 감소, 양식수산물 생산량 증가, 수산물 수급문제의 국제적 연동성 증대 등 수산물 수급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 이에, 급변하는 수산물 수급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 추진배경 일선수협 비리 근절 대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1단계)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18년 12월)
    - 운영품목 : 6개 품목(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참조기, 마른멸치)
  - ② (2단계) 시스템 고도화 추진('19 ~ '20년)
    - 운영품목 확대 및 소비분야 정보 확대
    - 수급분야 정보 확대 및 정보 고도화
- 구축완료 및 시범운영 2018년 12월



##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근거마련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3)

해외 신종질병의 유입 및 수산생물질병 진단법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 29일부터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2018년 5월 29일부터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법령, 약품, 질병동향 및 진단, 임상이론 및 실습, 직업윤리 등 관련 과목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부서별 사전공표정보

###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의무화 계획

- **추진배경** 해외 신종 질병의 유입 및 수산생물질병 진단법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필요
- **주요내용**
  - ①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필요시→의무화)
  - ②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이 수립한 연도별 교육 시행계획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고, 교육 시행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해양수산부

##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 044-200-5248)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한-인니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을 2018년 5월에 체결하였고, 2018년 8월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 현재까지 해양수산부는 한-중(95), 한-페루(12)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해양과학분야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에는 양국 공동센터장 하에 연구기술부 등 3개 부서를 설치하고, 공동연구센터 기능 및 활동의 점검·관리를 위한 양국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를 거점으로 양국간 해양에너지 기술교류 사업, 해양미세플라스틱 영향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지역 회복성 등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해양과학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인도네시아와 해양수산 협력으로 상생번영의 길 연다'

### 한-인니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계획

- 추진배경 한-인니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이행협정」체결(18.5월)
- 주요내용
  - ① 조직구성 : 공동센터장 2명, 행정부, 연구기술부, 교육훈련부 등 3개부서 설치
  - ② 공동위원회 : 양측 정부대표 및 연구기관 등 10명으로 구성, 공동연구센터 예산, 운영, 연구사업 등 점검·관리
  - ③ '18년 공동연구사업 : 해양에너지 기술교류, 해양침적 미세플라스틱 영향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지역 회복성
- \*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 치르본 캠퍼스에 센터설립
- 시행일 2018년 8월(예정)



##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15)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8년 7월 출범합니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금융지원은 물론, 해운거래 지원, 선사 경영개선, 산업간 상생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너지를 높일 것입니다.
  - 공사는 자산투자, 투자보증 등 정책패키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자금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에 분산되었던 기능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연계하여 One-Stop으로 서비스 하게 될 것입니다.
- 공사 설립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해운산업 재건과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의 토대가 마련되리라 기대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새소식>보도자료>해운산업 재건 본격 시동...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출범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 추진배경 포기할 수 없는 조선·해운 상생으로 재건
- 주요내용 해운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해양수산부

# 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 044-200-5933, 5934)

신항만사업 시행자에게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시켜 신항만 건설사업을 활성화합니다.

- ▣ 그 동안 신항만 투자비 규모가 크고,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18년 하반기부터는 신항만건설 예정 지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 또한, 항만기능 다양화 요구에 대응하여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되는 항만으로 확대합니다.
  - \* 종전에는 수출입화물 등의 화물처리를 위한 부두시설 중심
- ▣ 또한, 신항만건설 활성화 및 민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신항만 기본계획 보완, 사업시행자 범위, 실시 계획에 따른 관계법을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를 정비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새소식 > 보도자료 >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등 개정법을 시행

###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

- **추진배경** 신항만의 정의 등을 항만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사업절차 보완, 민간참여 유도로 항만시설의 적기 공급 등 신항만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 ① 신항만의 시설 투자비 회수의 한계를 감안하여 투자비 보전 또는 이용자 편의증진 등을 위해 신항만개발과 연계하는 부대사업 시행근거 마련
  - ② 신항만의 정의 확대,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절차 정비,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확대 등 신항만건설절차 보완
- **시행일** 2018년 5월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크루즈부두 편」 신설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5952)

전 세계적인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와 정부의 신 해양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크루즈 기반시설을 지속적 확충하기 위하여 크루즈부두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설계기준을 새로이 만듭니다.

- 우리나라의 크루즈산업 시장은 아시아 국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크루즈 기항 실적(2016년 기준 745 회)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연평균 23.9%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큰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크루즈 부두’ 편을 신설하여 크루즈 부두의 건설과 확장시 설계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크루즈 산업에 꼭 필요한 인프라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 크루즈부두 설계기준 신설 계획

- 추진배경 크루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크루즈 부두 편 신설  
② 전문가, 관계자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심의확정
- 시행일 2018년 8월말

# 해양수산부

##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관련 설계기준 신설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 5952)

대형 선박이 정박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황산화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합니다.

- 정박 중에 필요한 전력을 선박연료 대신 육상에서 공급하는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를 주요 대형 항만에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선박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에 필수적인 설계기준을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항만전기설비’ 편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 설계기준 신설 계획

- 추진배경 항만지역 선박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의 설계기준 마련
- 주요내용
  - ①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의 항만전기설비 편에 선박육상전원 공급설비 항목 추가
  - ② 전문가 및 관계자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심의확정
- 시행일 2018년 8월말

##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 042-481-8869)

2018년 8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도시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이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유아숲체험원의 규모가 1만㎡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증가하는 유아숲교육의 수요 충족 및 도시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유아숲지도사의 상시배치 기준 역시 현행 규정의 100분의 50 이내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완화 하였습니다.

\* 다만, 최소 배치인원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함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추진배경** 증가하는 유아숲체험원 수요 충족 및 도시지역의 특수성 반영
- **주요내용**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
  - 등록면적 : (당초) 1만㎡ 이상  
(변경) 100분의 50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 운영인력 : (당초)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 유아숲지도사 1명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 유아숲지도사 2명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 유아숲지도사 3명  
(변경) 각 호의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 인원의 100분의 50이내 다만, 최소 배치인원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한다.
- **시행일** 2018년 8월 22일

# 산림청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개정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6)

산불감시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채용 심사 시 외부인사를 과분수 이상 포함하여 공정한 선발이 되도록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감시원 채용시 적용됩니다.

- ▣ (현행) 산불감시원 선발 방법 및 자격요건 등의 세부기준은 운영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용하고 있습니다.
- ▣ (개정사항) 다만,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용심사위원 중 외부 인사를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응시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자는 제외한다.
  - 산림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
  - 산불예방·진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정보공개>훈령/예규/고시>산불감시원 운영규정(2018.5.15.)

### 2018년도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 개정

- **추진배경** 산불감시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 **주요내용**
  - ①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선발) 세부기준을 운영기관에서 별도 지정
  - ② 단, 채용심사위원 중 외부인원 인사를 50%이상이 되도록 개정
  - ③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자는 제외
- **시행일** 2018년 5월 15일  
\* 2018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시 개정사항 적용

## 정보 사각지대 영세어민을 위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기상청 해양기상과 (☎ 02-2181-0743)

고령의 노인 및 통신환경에 취약한 정보 사각지대의 영세어민의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기상안전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 해양기상정보의 주요 수요자는 정보 인지가 취약한 고령의 어민으로 여전히 스마트폰 활용도는 낮아 해상특보, 관측자료, 예보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기존에는 해상날씨와 상관없이 모든 관측정보가 매일 수신되어 정보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아 원하는 풍속, 파고의 임계값을 설정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꼭 필요한 해양기상 안전정보만 수신하게 됩니다.
  - ※ (예시) '풍속 14m/s 이상, 파고 3.0m 이상(풍랑주의보)' 로 설정하면 그 자료만 수신
- ▣ 또한, 관측자료는 등표(9개)에서 부이(17대), 파고부이(59대)를 추가하여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문자메세지 신청: 해양기상정보전달시스템(marine.kma.go.kr)

### 해양기상 맞춤형 문자서비스 요소 확대 및 개선사항

- **추진배경** 정보 사각지대 어민을 고려한 해양기상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① 임계값 설정 기능 추가  
(기존) 수신시간, 지역 설정 → (개선) 기상자료 임계값 추가
  - ② 해양기상 관측자료 확대 제공  
(기존) 등표 9개 상황 → (개선) 부이 17대, 파고부이 59대 추가
- **대상** 어민
- **시행일** 2018년 12월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Before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도록 규제



After

'18년 5월 29일부터는 제한업종을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으로 축소하여 새로운 벤처기업이 쉽게 나오도록 개선



## 2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시행일 : 2018년 6월

Before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청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

After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3 중소기업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시행일 : 2018년 12월 13일

Before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는 동방성장위원회 자율 권고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After

이에,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여 '18년 12월에 "특별법"을 시행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특별법 :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규정

### 4 산림청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

Before

목재류 수입시 관세청장에게  
납세신고 후 통관

After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으로  
목재류 수입시 **산림청장에게도** 수입신고





##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방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 02-2110-1837)

2018년 8월부터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SW사업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민간시장을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 사업재검토 또는 사업시행 시 유의할 것을 통보하고 있으나,
  - 권고 수준에 그침에 따라 민간시장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은 예산편성 시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발주 시에는 SW사업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MSIT PR)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정부, 5대 공공SW발주제도 혁신 추진키로

### SW산업진흥법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

- 추진배경 공공SW사업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여 SW산업 육성
- 주요내용
  - ① 공공기관이 SW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SW사업영향평가 의무화
    - 대상 : SW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기타 정보화 사업
    - 기준 : 민간 SW시장 침해가능성 및 사업의 필요성·공공성을 종합 검토
    - 방법 : 공공기관 자체평가 → (예산편성시) 과기정통부 제출, (발주시) 공개
  - ② SW시장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재검토
- 시행일 2018년 8월 22일

## 생산공정시설 이용 국가안전관리대상,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식물/동물/미생물)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044-203-4399)

2018년 12월부터는 생산공정시설에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 및 허가 등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은 생산공정시설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설 신고 및 허가, 동 시설에서의 이용 승인 등 국가 안전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생산공정시설에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가 안전관리 대상이 유전자변형미생물·식물·동물을 포괄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됩니다.
  - 이에 생산공정시설에서 유전자변형식물·동물을 이용하려는 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시설 신고·허가 및 이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검색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생산공정시설 이용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생산공정시설 국가 안전관리(신고·허가 등)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동식물을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
- **주요내용**
  - ① 생산공정시설 신고 및 허가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확대
  - ② 생산공정시설의 이용승인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확대
  - ③ 생산공정시설 허가 취소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확대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43-870-5445) 생활제품안전과 (☎ 043-870-5455)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의 KC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가정용 섬유제품 (성인용 의류, 속옷 등), 가죽제품 (가죽 가방, 지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등 생활용품 23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 또한 그간 전안법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으나, 디지털 TV·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直購: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형태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홍보마당>보도자료>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 전안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 중소기업들의 KC인증 부담 완화
- **주요내용**
  - ① 생활용품 23개 품목(안전기준준수대상)에 대해서는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 의무 면제
  - ②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 등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4425)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 하지만, IT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정부가 사전에 벤처기업 업종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 '18.4월 기준 237개) 중 미국의 사무실 공유 기업 "위워크"가 8위에 해당
- 이에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사행성 5개 업종\*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 ① 일반 유흥 주점업, ② 무도 유흥 주점업, ③ 기타 주점업, ④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된다

### 벤처기업 확인 가능 업종

- **추진배경** IT 기술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기업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사전에 벤처기업 업종을 규제하는 것에 한계
- **주요내용**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업종이 유흥성·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벤처기업 제한 업종 수 : 23개 → 5개)
-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042-481-4382)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정부 주요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3,000억원)을 신설합니다.

-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 동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서 0.3%p를 차감하여 지원하고, 대출기간은 5~10년, 개별기업당 지원한도는 45억원으로 운용합니다.
- 또한, 청년고용기업지원자금 신청기업은 정책자금 심사대상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우선도 평가서' '고용창출' 기업으로 간주하여 최우선 심사를 받게 됩니다.

**참고**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알림소식>법령정보>공고>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청년고용기업 지원자금 신설

- **추진배경**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대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등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 대출한도 : 운전 5억원, 시설 45억원
  - 대출기간 : 운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2.3%)에서 -0.3%p차감(변동)
- **시행일** 2018년 6월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 042-481-8969)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 ▣ '11년에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가 필요한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써,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 자율 권고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 이에, “특별법”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여,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후 대기업 진출 제한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 정부는 이러한 “특별법”이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 대기업은 소상공인 사업 영역에 진출하기보다, 新 산업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위법령 등 준비를 거쳐 올해 12월 중에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알림소식)보도자료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마련”(5.28)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추진배경**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
- **주요내용**
  - ① 영세 소상공인 중심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해당업종에서 대기업 진출을 제한
    - (절차) 소상공인단체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 중기부 심의 → 지정·고시
  - ②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산림청 임업통상팀 (☎ 042-481-4085)

2018년 10월 1일부터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 ▣ 수입업자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원목·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 2020년 이후부터 목재제품 전반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불법 벌채를 차단하여 지구 온난화를 막고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네시아·일본에 이어서 6번째로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분야별산림정보>산림보호>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 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지구 온난화 방지 및 합법 목재 교역 증진을 위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시행
- **주요내용**

  - ①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신고제 도입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 ② 산림청장이 지정한 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수입검사 대행 (동법 제19조의3)
  - ③ 증명서류 미보관시 목재생산업 등록취소(동법 제26조제6호)
  - ④ 정보의 추적 및 이력관리를 위해 최소 5년간 합법벌채 증명서류 보관 (동법 제27조 제1항)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



# 10

## 환경

환경부  
기상청



# Main Institutions Infographic

## 1 환경부

###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시행일 : 2018년 8월 18일

Before

유전자원법 제정에 따라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새롭게 도입

- 미신고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After



## 2 환경부

###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시행일 : 2018년 11월 29일

Before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이 회수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 회수할 수 있어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등 냉매관리 소홀



After

오존층 파괴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 위해 냉매회수 전문업 도입



-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 보유, 등록증 발급받은 업체만이 냉매회수 가능

##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51)

유전자원법(’17.1.7제정)에 따라 ’18.8.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유전자원의 표본 또는 실물을 획득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

\*\* 유전자원등을 활용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하여 생명공학기술 적용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

☐ (접근신고)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 등

- 다만, 개별법\*상 국외반출승인 또는 획득허가(신고)를 한 경우 접근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생명 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유전자원 관리 국가 책임기관 현황〉

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	병원체 유전자원	해양생물 유전자원	생명연구 유전자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절차준수신고)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점검기관은 절차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도 보유

### 〈유전자원 관리 국가 점검기관 현황〉

야생생물 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	병원체 유전자원	해양생물 유전자원	생명연구 유전자원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이익공유 합의 의무) 상호간 계약(상호합의조건) 체결을 통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 자원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 이익공유 비율과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일부국가(인도, 브라질 등)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2017.1.17. 공포)

##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시 신고의무

- **추진배경**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
- **주요내용**
  - ①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외국인 등은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②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해당국가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미신고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시행일** 2018년 8월 18일



##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 044-201-6952)

2018년 11월 29일부터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3년 냉매관리제도가 시행된 이래 특별한 자격기준 없이 회수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냉매를 회수할 수 있어, 대기중으로 무단 배출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냉매의 적정회수를 위해 냉매회수 전문업을 도입하여 전문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만이 냉매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냉매회수업 등록 유효기간인 2019년 5월 28일까지는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업체도 영업을 가능합니다.
- 또한, 냉매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 냉매충전용량 50kg 이상 건물의 공기조화기만 관리하던 것을,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 산업용 및 식품의 냉동·냉장용 기기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운영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냉매관리현황을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새나가는 냉매 잡아 온실가스 줄인다

###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 등 냉매관리 강화

- 추진배경 오존층 파괴억제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
    - 냉매회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냉매회수업 가능
  - ②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 확대(공기조화기 → 식품의 냉동·냉장용, 산업용)
- 시행일 2018년 11월 29일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7)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관리가 강화될 계획입니다.

- ▣ '16년 12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는 모두 오염물질을 법적 기준 미만으로 방출하도록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나,

  - ※ 「실내공기질 관리법」개정('16.12월)
  - 이미 시중에 유통되거나 사용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 그리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에 방출량 적합판정을 받았더라도 사후점검 결과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는 적합확인을 취소하고 모두 회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국민들이 즉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은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조치 대상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제15583호, 2018.10.18. 시행) 제10조~제10조의6 개정

<b>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b>	<b>• 추진배경</b>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보완
	<b>• 주요내용</b>	① 오염물질 방출 적합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표지부착 의무화 ② 사후관리 결과 방출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에 대한 적합확인 취소 및 회수조치 가능
	<b>• 시행일</b>	2018년 10월 18일

##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2)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용중지 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 될 계획입니다.

- ▣ 지금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명령만 부과했으나,
- 2018.12월 13일부터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준수가 가능 할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됩니다.
  - 다만, 배출허용기준 초과 원인에 따라 단시일 조치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개선명령이 부과됩니다.
- \* 다이옥신은 비의도적 배출 물질로 생성원인이 복잡하고 측정에 3~4주가 소요되며,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시설 이 포함되어 또 다른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단서조항 마련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 추진배경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배출시설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명령 부과. 단, 경미한 위반사항\*은 개선명령을 부과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추진중 ('18.7~12)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환경부 수도정책과 (☎ 044-201-7128)

수도용 자재·제품(이하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량 수도용 제품은 신속히 리콜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을 추가합니다.

- 기존에는 수도용 제품이 정기검사 등에서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에 해당 제품의 수거·파기 등의 리콜을 시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인증 취소 처분 절차에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 제품이 그 기간 동안 바로 리콜되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도용 제품은 인증 취소 이전이라도 바로 리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현재 44개 항목인 수도용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에 니켈 항목(용출기준 0.007mg/L)을 추가합니다.

아울러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수도용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기검사(2년 단위)에 더하여 수시검사를 도입합니다.

- 또한, 수도용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회피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수도법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 **주요내용**
  - ① 위생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수도용 제품은 인증취소 이전이라도 수거·파기 등 리콜조치 시행, 현행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
  - ② 수도용 제품 수시검사 도입 및 정기·수시검사 거부·방해·회피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8년 6월13일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044-201-7186)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급하기 위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였으나,
- 이제는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 조사, 토양오염신고 등에 따라 우리기준을 초과하여 정밀조사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구체화하여 지하수오염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 2018년 하반기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시기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 조사, 토양오염 신고 등에 따라 우리기준 초과하여 정밀조사 명령을 받은 시설로 확대
  -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 구체화
- **시행일** 2018년 7월(잠정, 개정안 규제심사중)

# 환경부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 044-201-6713)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취약계층 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 ▣ 그동안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취득세·자동차세·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아온 것처럼, 환경 개선부담금도 감면받도록 하였습니다.
- ▣ 또한 장애 1, 2등급 및 3등급 중 일부만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3등급 장애 전체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법령>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 **제목**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주요내용** ① 타법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감면대상 포함  
②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 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 (☎ 02-2181-0268)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폭염 재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6월 1일부터 '폭염영향정보'를 시범 제공합니다.

기존의 '폭염예보'가 폭염 특보(주의보 또는 경보)시 기온 위주로 예보를 하였다면, '폭염영향정보'는 폭염특보 발표 이전에도 고온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폭염영향정보'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 요령을 폭염 위험 수준별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올해 시범운영기간에는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뿐만 아니라, 특보 발표 이전에도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38℃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도 '폭염영향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 폭염영향정보 : 과거 폭염 피해사례와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보건, 농업, 산업, 가축, 에너지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차별화한 정보

###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 **추진배경** 폭염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요령을 제공하여 재해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보단계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선제적 정보제공 필요
- **주요내용**
  - ① 제공내용 : 폭염 위험수준별 사회·경제적 영향 및 대응 요령
  - ② 발표방법 : '기상 특·정보문', 문자서비스, 모바일웹(m.kma.go.kr), 날씨누리(www.weather.go.kr)
    - 31℃ 이상 3일 또는 경보심각(38℃이상 2일) → 폭염관심정보와 문자 제공
    - 폭염특보 → 기존 특보문에 폭염영향정보 제공
- **시행일** 2018년 6월 1일

# 기상청

##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기상청 이상기후팀(☎ 02-2181-0462)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11월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가뭄예보\*'를 처음 시행합니다.

\* 기상학적 가뭄 : 특정 지역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과거 같은 기간의 평균 강수량(관측개시~2018년 현재)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

기상학적 가뭄예보는 가뭄 발생 현황과 앞으로의 가뭄 발생 가능성을 1개월 및 3개월 단위로 발표됩니다.

■ 발표 내용은 167개 시군별 가뭄 발생 현황과 확률장기예보 기반의 가뭄 전망으로 가뭄 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며 남한지도 형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가뭄 구분(4단계) : 약한가뭄 - 보통가뭄 - 심한가뭄 - 극한가뭄

###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최근 가뭄발생 피해 증가로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해 상세 가뭄 정보 제공 (월1회 → 월4회) 필요
- 주요내용
  - ① 제공내용 : 가뭄 발생 현황·분석 정보 및 확률 기반 전망자료
  - ② 발표주기 : 1개월 가뭄전망(매주 금요일), 3개월 가뭄전망(매월 27일경)
  - ③ 발표방법 :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http://hydro.kma.go.kr/hd>)에서 제공
- 시행일 2018년 11월 27일



[붙임] 기상 가뭄예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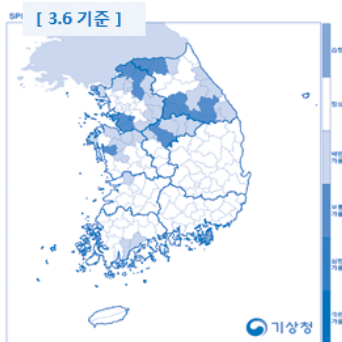
## 기상 가뭄 예보 (1개월 전망)

2018년 3월 9일 발표

※ 다음 1개월 전망은 3월 16일 발표

### 가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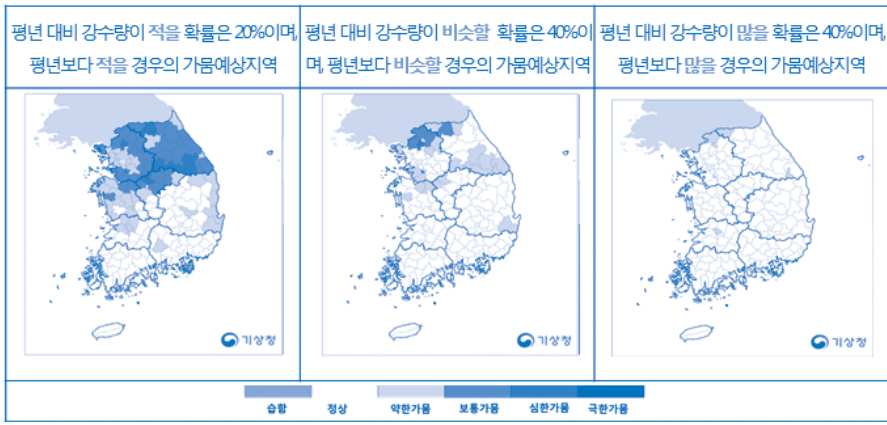
- (강수)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2% 수준입니다.  
- 서울경기(60%), 강원(63%), 충남(75%)
- (가뭄) 최근 비로 가뭄은 완화되었으나, 지속된 강수부족으로 중부 일부지방 중심으로 가뭄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가뭄 예보

- 최근 5개월 누적강수량('17.10.7~'18.3.6)은 평년의 74% 수준이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47.5mm)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 지역적 강수편차로 인한 국지적 가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망일 : 2018년 4월 8일





# 11

## 문화재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042-481-4928)

문화재매매자의 상호명, 영업장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허가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이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문화재매매업자가 상호명이나 영업장의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

- 추진배경 문화재매매업자가 상호명이나 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 변경
    2. 영업장 주소지의 변경
  - 제10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7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시행일 2018년 12월 13일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 기획재정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b>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 조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li> <li>•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li> <li>• 다만, 다음의 경우는 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과세되는 것의 범위</li> <li>• (좌동)</li> <li>• 면세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 군무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동산임대업, 도매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은 과세</li> </ul> </li> </ul> <p>※(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gt;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상세본)</p>	<p>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호 (‘18.7.1)</p> <hr/> <p>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p>
<p><b>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의무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li> <li>•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총 근로대가가 연 30억원 초과</li> <li>•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li> <li>•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세율</li> <li>• 지급금액의 17%</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li> <li>• 30억원 → 20억원</li> <li>• (좌동)</li> <li>•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세율 인상</li> <li>• 17% → 19%</li> </ul> <p>※(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gt;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	<p>소득세법 (‘18.7.1)</p> <hr/> <p>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과 (044-215-4420)</p>
<p><b>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 사전심사 도입</b></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요량 사전심사 도입</li> <li>• 소요량 계산방법 및 계산의 적정성을 세관장 심사신청</li> <li>• 신청받은 세관장은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지</li> <li>• 통지받은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 재심사 신청 가능</li> <li>• 세관장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의무</li> <li>• 사전심사 결과 1년간 유효</li> </ul> <p>※(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gt;2017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p>	<p>관세환급특례법 (‘18.7.1)</p> <hr/> <p>기획재정부 관세제과 (044-215-4412)</p>



##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li> <li>*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li> </ul> <p>☞(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gt;국토교통뉴스&gt;보도자료&gt;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18-20년) 수립</p>	주거급여법 ('18.10월)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9,474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율 : 최대 1.8% 적용</li> <li>■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미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율 : 최대 3.3% 이자율 적용(우대금리 1.5%p 제공)</li> <li>■ 비과세 :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의 5백만원까지 비과세 적용</li> </ul>	주택청약자축출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등 ( '18.7월말)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하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중견기업에 1년이상 재직중인 34세 이하 청년과 중소중견기업이 공제에 가입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원 지원</li> </ul>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35조의 2 ( '11. 1월)
			중소벤처 기업부 인재활용 촉진과 (042-481-4465)

##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배송지 정보 제출 대상 확대 시행</p>	<p>■ 목록통관 건만 제출 대상</p>	<p>■ 수입신고 건까지 확대 시행</p> <p>☞(참고) 관세청 홈페이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공고</p>	<p>관세법 (‘18.1월)</p> <p>특송수입통관고시 (‘18.7월)</p>
			<p>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p>
<p>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 확대</p>	<p>■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의 원산지확인 애로</p>	<p>■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해 국내산 쌀의 원산지확인 가능</p> <p>☞(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뉴스/소식」새소식) 보도자료)정부양곡 국내산 쌀 사용 가공식품도 원산지확인 가능해진다</p>	<p>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 (포괄)확인서 고시 (‘18.5월)</p>
			<p>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11)</p>
<p>일시수출입 차량 신고세관 확대</p>	<p>■ 최초 수출입 통관시세관 재수출입 신고 원칙</p>	<p>■ 전국 공항만 세관에 재수출입 신고</p> <p>☞(참고) 관세청 홈페이지「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공고</p>	<p>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18.6.1)</p>
			<p>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6)</p>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한 약자기업 지원	장애인· 사회적 기업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 확대	■ 경영상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li> <li>•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 10% 가산 평가 대상을 토목·건축공사 10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으로 확대</li> </ul> <p>☞(참고) 조달청 홈페이지&gt;정보제공&gt;업무별자료&gt;시설공사</p>	<p><b>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b> (’18. 7월)</p> <hr/> <p><b>조달청 시설총괄과</b> (042-724-7338)</p>
	복합업종 공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선	■ 복합업종 시공경험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업종 시공경험평가기준</li> <li>•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실적계수 산정시 예비가격기초금액은 전체공사의 기초금액에 평가대상 업종의 구성비율(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전체공사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대비 해당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li> </ul> <p>☞(참고) 조달청 홈페이지&gt;정보제공&gt;업무별자료&gt;시설공사</p>	<p><b>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b> (’18. 7월)</p> <hr/> <p><b>조달청 시설총괄과</b> (042-724-7338)</p>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하자담보책임 기간 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물품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현장설치도 물품에 한하여 수요기관 납품업체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li> </ul> <p>☞(참고) 조달청 홈페이지&gt;정보제공&gt;업무별자료&gt;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 제6항 및 제7항)</p>	<p><b>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b> (’18.5.28)</p> <hr/> <p><b>조달청 구매총괄과</b> (042-724-7464)</p>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대 : 임의설치</li> <li>■ 사립대 : 의무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의무 설치</li> </ul>	<b>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b> ('18.5.29.)
			<b>교육부국립대학 정책과</b> (044-203-6808)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 유형)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li> </ul>	<b>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 유형) 시행</b> ('18. 9월)
			<b>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b> (044-203-6494)
매치업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 산업혁명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온라인 중심 교육프로그램 매치업 도입</li> </ul> ※(참고) 매치업(Match業) 홈페이지 (www.matchup.kr)	<b>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b> (044-203-6342)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지원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5,000여명 대상 연간 35만원 지원</li> </ul> ※(참고)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or.kr)	<b>평생교육법 시행령</b> ('18. 2월)
			<b>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b> (044-203-6392)

## 여성가족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및 구상권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촬영물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하거나, 자비로 삭제업체에 의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자 상담·불법촬영물 삭제·사후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li> </ul>	성폭력피해자 지원법 (18. 9. 14.)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개월 지원(최장 9개월)</li> <li>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시 본인 동의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개월 지원(최장 12개월)으로 지원기간 연장</li> <li>한시적 양육비를 긴급지원 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 가능</li> </ul>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 9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4)
청소년수련시설의 복합시설 설치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른 용도와 복합설치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시설 및 체육시설과 복합설치 가능</li> </ul>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18. 7~8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3)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검진 후 질환의심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 지원</li> </ul>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18. 7월)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5)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년도 기준 새일센터 155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58개소로 3개소 확대 운영으로 경력 단절여성등에 대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 제고</li> </ul>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18년 하반기)
			여성가족부경력단절 여성지원과 (02-2100-6208)

##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한도액 제한	■ 규정 없음	■ 유료아이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  ※(참고)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아이템 결제 한도 1일 100 만원 이하로 자율규제	자율규제 (’18. 6월)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02-2110-1548)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시도감염병관리 지원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개소 운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북, 제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개소로 운영 확대(충남, 전남 추가)</li> </ul>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043-719-7131)</p>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및 오염인근 지역 신규 선정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9개국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8개국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콜레라 : 말리위, 잠비아 등 15개국</li> <li>- AI : 중국(11개 성·시)</li> <li>- 메르스 :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아랍에미리트</li> <li>- 폴리오 :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등 7개국</li> <li>- 황열 : 아프리카, 중남미 42개국</li> <li>- 페스트 : 마다가스카르</li> </ul> </li> <li>☞(참고)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gt;해외질병&gt;검역감염병 오염지역</li> </ul>	<p>검역법</p> <p>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7140)</p>
	검역 감염병 오염인근 지역 신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르스 오염인근지역 1개국 신규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타르' 지정</li> </ul> </li> <li>☞(참고) 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gt;해외질병&gt;검역감염병 오염지역</li> </ul>	<p>검역법 시행규칙</p> <p>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3-719-7140)</p>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감시체계 및 시범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의 신고 이외에 환자주변 관리 및 방역 미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확진환자 관리 및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li> <li>매개모기 밀도 및 성충감사, 환자 발생지역에 효율적인 집중방제</li> </ul>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7월4주 시행 예정)</p> <p>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043-719-7165)</p>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만9,000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00명 추가지원</li> <li>☞(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gt;알림마당&gt;보도자료)</li> </ul>	<p>근로기준법 ('18. 7월)</p> <p>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공공보육팀 (044-202-3556)</p>

##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득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 보험료(세대원 성별, 나이 등으로 추정된 소득에 부과) 납부</li> <li>■ 재산 공제 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전액에 보험료 부과</li> <li>■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소득보험료 폐지, 연소득 100만원 이하 최저보험료(13,100원) 납부</li> <li>•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인상분 전액 감액(~2022년 6월)</li> <li>■ 재산공제제도 도입, 재산 과표 5천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 ~1,200만원 공제 후 보험료 부과</li> <li>■ 4천만원 미만 소형차(1,600cc 이하), 9년 이상 노후자동차, 생계형(승합차·화물차·특수차) 자동차 보험료 면제</li> <li>■ 4천만원 미만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 보험료 30% 감면</li> </ul> <p>☞(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lt;알림마당&gt;보도자료)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18. 7월)</p> <hr/>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 27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요건) 금융소득(이자 배당), 공적연금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간 4,0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li> <li>■ (재산요건)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제외</li> <li>■ (부양요건) 부모, 자녀 등 직계존 비속 외에도 형제 자매까지 광범위 하게 피부양자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소득(과세기준) 3,400만원 초과 시 제외</li> <li>■ 재산과표 5억4,000만원 초과하면서 연소득(과세기준) 1천만원 초과 시 제외(재산과표 9억원 초과 시에도 기준과 같이 제외)</li> <li>■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예외적으로 연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 과표 1.8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li> </ul> </li> </ul> <p>☞(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lt;알림마당&gt;보도자료)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18. 7월)</p>



##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고소득· 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li> <li>■ (지역가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3,4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담</li> <li>■ 소득 상위 2%(연소득 3,860만원, 필요 경비율 90% 시 약 3억 8,000만원 초과), 재산 상위 3%(재산 과표 5억 9,700만원, 시가 약 12억원 초과) 보험료 인상</li> </ul> <p>☞(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gt;알림마당&gt;보도자료&gt;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p>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경우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li> <li>• 병·의원은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 적용</li> </ul> <p>☞(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gt;알림마당&gt;보도자료&gt;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줄어</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고시 (*18. 7.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장애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만9,960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만원 지원으로 확대</li> </ul>	장애연금법 (*18. 9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 기반과 (044-202-3321)
보행상 장애 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지절단 1급을 포함한 보행상 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보행상 장애 유형에 상지 관절, 기능 1급 장애 포함(신규)</li> </ul>	장애등급판정기준 (*18. 8월 예정)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지원과 (044-202-3303-4)

##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b>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25% 이하): 50% 감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료 순위 25%이하 60%감경 변경</li> <li>■ 보험료순위 25%초과 ~ 50%이하 40% 감경 확대</li> <li>※(참고)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8.7.시행 예정)</li> </ul>	<p><b>고시 개정</b> (‘18. 7월)</p> <hr/> <p><b>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b> (044-202-3491)</p>
<b>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6개월 ~ 만 5세 미만 어린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후 6개월 ~ 초등학교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 확대</li> <li>• (‘17년) 219만 명 → (‘18년) 563만 명</li> </ul>	<p><b>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시</b> (‘18. 9월)</p> <hr/> <p><b>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b> (043-719-6831)</p>
<b>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미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부터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예정</li> </ul>	<p><b>고시</b> (‘18.11월 예정)</p> <hr/> <p><b>보건복지부 의료보장 관리과</b> (044-202-2601)</p>
<b>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만원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만원으로 인상 지급</li> <li>※(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기초연금을 올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li> </ul>	<p><b>기초연금법</b> (‘18. 9월)</p> <hr/> <p><b>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b> (02-202-3672)</p>
<b>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에 의거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미흡, 비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매어르신에 대해 지자체 장이 직접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두터운 후견서비스(의사결정 지원) 제공</li> </ul>	<p><b>치매관리법</b></p> <hr/> <p><b>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b> (044-202-3531)</p>

##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모든 의약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의약품에 대하여 전성분 표시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리대, 마스크등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전 성분 명칭 기재</li> </ul>	<p>약사법 및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18.10.25)</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3712)</p>
<p>'휴대용 공기·산소'의 약품 지정으로 안전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에 해당하여 별도 허가심사 불필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사전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평가 및 수거검사를 받는 등</li> </ul>	<p>약사법 및 의약품 범위 지정 (*18. 11월)</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책과 (043-719-3710)</p>
<p>자가사용용 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서류준비* → 시험용 의료기기 확인서 신청(지방청) → 표준통관예정보고(협회) → 수입·통관</li> <li>• 제출서류 : 진단서, 제품 설명자료, 외국허가현황, 사업자등록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자 서류준비(간소화)* → 수입요건면제 확인(정보원) → 수입·통관</li> <li>• 제출서류 : 진단서, 제품정보 (기타 서류는 정보원에서 직접 확인)</li> </ul>	<p>의료기기 수입요건면제 확인 등에 관한 규정 (*18. 7월)</p> <hr/> <p>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73)</p>

##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공익채널 공익성 방송 분야 확대 및 공익·장애인채널 유효기간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성 방송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사회복지</li> <li>②과학·문화 진흥</li> <li>③교육지원</li> </ul> </li> <li>■ 유효기간 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성 방송분야 중 '교육지원'분야를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li> <li>■ 유효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li> </ul> <p>※(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gt;알림마당&gt;보도자료&gt;방통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제도개선안」 및 「2018년도 공익채널 선정·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 수립</p>	<p>방송법시행령 (’18. 2월), 공익성방송 분야 고시 (’17. 11월)</p> <hr/> <p>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02-2110-1434)</p>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 최초지정 3년, 연장 1~4년	■ 최초지정 5년, 연장 1~7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8. 6. 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8)
재해영향평가 제도시행	■ 행정계획, 개발사업에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경우 사전재 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	■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 검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세분화하여 검토항목 및 검토절차를 달리함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재해영향평가 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자연재해대책법 (‘18.10.25)
			재해영향분석과 (044-205-5168)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 취업제한 • 일몰적 10년간 취업제한  ■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치원,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 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 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 택관리사무소(경비원),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청소년 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 노래연습장업,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 취업제한 • 법원이 형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선고 • 종전(‘18.7.17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고형에 따라 1-5년간 차등적용 * 3년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이하 징역금 고형 3년, 벌금형 형확정일부터 1년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 확대 적용되는 시설 : 대학, 학생상담지원시 설, 위탁교육시설, 통학서비스수행기관, 특수 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 단 체, 「지방자치법」144조 공공시설 중 행안부 장관지정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 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18.9.14. 신규추가)	청소년성보호법 ( 18. 7.17.)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100-6409)

##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p>	<p>■ 신고의무 대상기관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교외 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 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체육시설, 의료 기관(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p>	<p>■ 신고의무 대상기관 • 대학 추가</p>	<p>청소년성보호법 (18. 7.17.)</p> <hr/> <p>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100-6409)</p>

##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제출</p>	<p>신 설</p>	<p>■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 신청한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장비의 목록 제출</p> <p>☞(참고) 관세청 홈페이지「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공고</p>	<p>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18. 6월)</p> <hr/> <p>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1147)</p>

##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li> </ul>	<b>도로교통법</b> (18. 9. 28)  <b>경찰청</b> <b>교통기획과</b> (02-3150-0659)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규정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시 범칙금 3만원 부과</li> <li>■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li> </ul>	<b>도로교통법</b> <b>시행령</b> (18. 9. 28)  <b>경찰청</b> <b>교통기획과</b> (02-3150-0659)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li> <li>■ 일반도로에서 앞좌석만 좌석 안전띠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만원 지원으로 확대</li> </ul>	<b>도로교통법</b> <b>시행령</b> (18. 9. 28)  <b>경찰청</b> <b>교통기획과</b> (02-3150-0659)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주변의 주차만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li> <li>■ 주·정차 금지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추가</li> </ul>	<b>도로교통법</b> <b>시행령</b> (18. 8. 10)  <b>경찰청</b> <b>교통기획과</b> (02-3150-0659)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진 곳에 주차 시, 자동차가 굴러 내려 오지 않도록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다음 1)바퀴에 고임목을 받치거나, 2)조향장치를 가까운 길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거나, 3)그밖에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li> </ul>	<b>도로교통법</b> <b>시행령</b> (18. 9. 28)  <b>경찰청</b> <b>교통기획과</b> (02-3150-0659)

국방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군 경력증명서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지원경력과 파병경력 별도표기</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 경력증명서의 '명예로운 경력'에 국가행사 및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인원과 해외파병인원을 추가</li> <li>* 근거 : 국방인사관리훈령 제201조</li> </ul>	<p>국방인사 관리훈령 (*18.2.22.)</p> <hr/> <p>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p>
		<p>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확대</p>	<p>■ 121명 *지역특성 반영</p>
<p>보상휴가 및 포상 휴가신설</p>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휴가 : 특수지 반기 2일, 20년 근속자 7일</li> <li>■ 포상휴가 : 연간 5일</li> <li>☞(참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li> </ul>	<p>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훈령 (*18.5월)</p> <hr/> <p>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p>



##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상담활동 보장 및 처우개선 확대	동일부대 근무연한 확대	■ 2~3년 *특수지 : 2~5년	■ 2~5년(특수지 : 2~10년)  ☞(참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훈령 (18.5월)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
	인사고료 인센티브	신 설	■ 근무지 서열: 30% 반영  ■ 근무경력: 10% 반영  ☞(참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훈령 (18.5월)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
군무원 공채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신 설	■ 추가합격자 선발 기준 • 군무원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범위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 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추가로 선발 • 근거 :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18조의2 * 신설	군무원인사 관리훈령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02-748-5105)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개편		■ 협약은행 • 2개 은행  ■ 월납입한도액 • 은행 10만원 • 개인 20만원  ■ 세제 혜택 • 없음	■ 협약은행 • 14개 은행  ■ 협약은행 • 은행 20만원 • 개인 40만원  ■ 세제 혜택 •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 적금상품 비과세 적용  ☞(참고) 국방부홈페이지)보도자료)청년병사 목돈마련 금융지원 확대	협약서 (18.8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748-6613)

##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p>	<p>■ 인권보장 규정이 추상적으로 규정</p>	<p>■ 2시간 마다 10분이상 휴식권 보장 구체화</p> <p>■ 군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p> <p>※(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군 수사절차 인권보장 강화 시행” 게시 예정(6월말)</p>	<p>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18.7월)</p>
		<p>국방부 법무담당관 (02-748-6811)</p>	
<p>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강화</p>	<p>■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 실시 (1인 3,000~5,000만원 보상)</p>	<p>■ 전사자 1인당 1.4~1.8억원 추가 보상</p>	<p>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7월)</p>
			<p>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p>
<p>군 무단점유 사·공유지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 추진</p>	<p>신 설</p>	<p>■ 군 무단점유 사실 소유자에게 개별통보</p> <p>■ 국가 배상절차에 대한 안내 실시</p>	<p>(’18.10월)</p>
			<p>국방부 국유재산과 (02-748-5830)</p>

##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 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하여 증명</li> </ul> <p>☞(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열린마당)보훈처소식)보도자료)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명</p>	<p>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규정 (’18.6.1.)</p> <hr/> <p>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044-202-5581)</p>
심리재활집중 센터 운영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을 위한 심리재활 서비스 제공</li> <li>■ 중증, 전문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심리재활집중센터 특성화된 서비스 지원</li> </ul>	<p>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7)</p>
인천보훈병원 개원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및 경기도 서부지역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진료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건립</li> <li>■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국가유공자 다빈도 질환에 특성화된 진료서비스 제공</li> </ul>	<p>국가유공자법 제41조(의료지원) (’18.8월)</p> <hr/> <p>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7)</p>
응급진료 통보기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진료시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진료시 입원후 14일의 통보기간을 경과한 경우 3년 이내 통보시 진료비 지원</li> </ul>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18.7.31)</p> <hr/> <p>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044-202-5642)</p>

##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서류 기본증명서로 간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하기서 사본,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또는 관보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하기서 사본,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관보사본 또는 기본증명서</li> </ul>	<p><b>병역법 시행규칙</b> (*18.6.11.)</p> <hr/> <p><b>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b> (042-481-2968)</p>
<p>‘대학원 진학사유’ 입영연기 등 8개 분야 28세 이상 병역의무자 입영연기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령 등의 제한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8세 이상자 등 입영일자 연기 제한</li> <li>• 사유(8개) : 공익·국가업무 수행 중 홍보 활동, 형제 동시복무,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응시, 고졸 검정고시, 직업훈련원 수강, 학점 은행제 수강, 대학원 진학예정, 졸업예정</li> <li>• 다만, 질병, 가족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연기 가능</li> </ul>	<p><b>현역병 입영업무 규정</b> (*18.5.29.)</p> <hr/> <p><b>병무청 현역입영과</b> (042-481-2716)</p>
<p>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에 수의과대학 본과 1·2학년 평균성적 반영으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li> </ul> </li> <li>■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등급점수(100점)</li> <li>• 수능성적(50점)</li> <li>• 예과1·2학년성적(50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li> </ul> </li> <li>■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등급점수(100점)</li> <li>• 본과1·2학년성적(50점)</li> </ul> </li> </ul>	<p><b>병역법 제119조</b> (*18.5.29.)</p> <hr/> <p><b>병무청 현역입영과</b> (042-481-2717)</p>
<p>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중 영리활동 및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7항</li> <li>•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승선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복무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제7항 단서 신설</li> <li>•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 가능</li> <li>•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 가능</li> </ul>	<p><b>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b> <b>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6</b> (*18.5.29.)</p> <hr/> <p><b>병무청 산업지원과</b> (042-481-2771)</p>

##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6개월 미만 국외체제자로서 정해진 날짜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출국사유' 입영연기원 신청	■ '출국시 국외 입영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 6개월 이상 체재시 국외 입영연기</li> <li>■ 6개월 미만자로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입영일자 연기 ('출국' 또는 '출국대기' 사유 연기)</li> </ul>	입영연기 관리규정 (*18.5.29.)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16)

##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미래도전기술품개발 제도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학기술전문사관 및 사이버기술사관 대상 과제경연대회 개최</li> <li>■ 첨단기술분야 전문가 선발 및 연구개발 과제 기획 추진</li> </ul>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18. 9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2079-6316)
방산 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합정사업 제도개선	■ 착·중도금에 대해 100% 보증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착·중도금에 대해 100% 보증서 제출(중전 동일)</li> <li>■ 합정사업에 기성제도 적용하고, 기성대기에 대해 50%만 보증서 제출(신설)</li> </ul>	기성제도 운영지침 (*18.9월)
			<p>※(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gt;알람·소식&gt;보도·해명자료&gt;보도자료&gt;방위사업청 조선업·지역경제 살리기 팔견어</p>

#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 조선소 부담 완화를 위한 함정사업 제도개선	착· 중도금 제도개선	■ 방위사업과 무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착·중도금 지급불가	■ 방위사업과 무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착·중도금 지급가능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방위사업 청 조선업·지역경제 살리기 팔걸어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18.7월)
	함정사업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 함정사업 추진 간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지원 미비	■ 함정사업에 대해 기술 전문기관인 국방 기술품질원 기술지원 실시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방위사업청 조선업·지역경제 살리기 팔걸어	방위사업청 전투함사업팀 (02-2079-5510)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신설	신 설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신설) 선정시 최대 3년간 5억원 지원	■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신설) 선정시 최대 3년간 5억원 지원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18. 6월)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확대	■ 10억	■ 선정과제 당 지원금 최대 30억원으로 확대	■ 선정과제 당 지원금 최대 30억원으로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 (02-2079-6443)
				방위사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 (*18. 7월)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창의·도전적 사업 결과평가시 성공·실패 판정 폐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의·도전적 사업의 결과평가시 성공·실패 판정을 폐지하여 연구성과 질적수준, 우수성 및 활용성 중심의 정성평가 실시</li> </ul>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MSIT PR>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 >'I-KOREA 4.0 : ICT R&D 혁신 전략 발표'(596번)	해당없음 (*18.5.31.)
			과기정통부정보통신 방송기술정책과 (02-2110-2955)

##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li> </ul>	여권법 시행령 (*18. 8월)
			외교부 여권과 법무팀 (02-2002-0138)

##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문서 양방향 유동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방향(국민 → 행정기관)서비스</li> <li>※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문서처리 결과 회신은 대기 등 수기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방향 문서유통 서비스 제공</li> <li>•행정기관에서 문서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개선</li> </ul>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18.9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2-2100-4469)

##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주 최대 노동시간 한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동자의 노동시간은 1주 최대 68시간까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300인 이상) * 300인 미만 : '20.1.1, 50인 미만: '21.7.1. 적용</li> </ul>	<p>근로기준법 제53조 ('18.7.1)</p> <p>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46)</p>
	연소 근로자 최대노동 시간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주 최대 46시간까지 근로 가능 (46시간=40시간+6시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40시간=35시간+5시간)</li> </ul>	<p>근로기준법 제53조 ('18.7.1)</p> <p>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46)</p>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한 없이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 26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례업종 5개로 축소(21개 업종은 제외) * ①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li> <li>특례제도 도입시 '연속 휴식' 부여</li> </ul>	<p>근로기준법 제53조 ('18.7.1)</p> <p>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044-202-7546)</p>
난임치료휴가 신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li> </ul>	<p>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 ('18.5.29)</p> <p>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p>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 출근한 것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차유급휴가 산정 위한 출근을 따질 때 육아휴직기간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한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li> </ul>	<p>근로기준법 60조 6항 ('18.5.29.)</p> <p>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p>	



##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함</li> </ul>	<b>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0조</b> (*18.5.29.)
			<b>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b> (044-202-7476)
생활안정자금 용자 확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재직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요건)중위소득 3인가구</li> <li>■ (자녀학자금)고등학교 재학</li> <li>■ (용자한도액)임금체불생계비 : 1,000만원자녀학자금 : 500만원</li> <li>■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요건) 중위소득 4인가구</li> <li>■ (자녀학자금)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li> <li>■ (용자한도액) 임금체불생계비 : 2,000만원 자녀학자금 : 700만원</li> <li>■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 1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2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 중 선택</li> </ul> <p>* 소액생계비는 제외</p>	<b>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b> (*18. 5.23.)
			<b>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b> (044-202-7559)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한액 150만원, 둘째 자녀일 경우 2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li> </ul>	<b>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2</b> (*18.7.1.)
			<b>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b> (044-202-7476)
'소규모 건설공사' 및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li> <li>■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건설공사 공사규모와 금액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li> <li>■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li> </ul> <p>※(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gt;정보공개&gt;법령정보&gt;최근제·개정법령&gt;산재보험 상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p>	<b>산재보험법 시행령</b> (*18.7.1)
			<b>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b> (044-202-7705)

##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유해업종 제외 모든업종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li> </ul>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지침 (*8.6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02-202-74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3명고용시 지원</li> <li>■ 1인기준 667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인 미만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100인 이상 기업은 3명이상 고용시 지원</li> <li>■ 1인기준 900만원</li> </ul>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불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li> </ul>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 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18.6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퇴직금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감소의 경우가 명시되지 않았고 사용자 책무 미이행시 제재규정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감소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li> <li>• 사용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li> <li>•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li> <li>■ 동 사용자 책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li> </ul>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 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8.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7)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를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노동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한 자진퇴사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li> </ul>	고용보험법 시행령 29조1항 (*18.5.29.)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미규정	■ 미 실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8. 5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li> <li>• 기존 2년형에 추가하여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li> <li>※ 만기공제금 (2년형) 청년 300 + 정부 900(일반회계) + 기업 400(고보기금) = 2년 1,600만원 (3년형) 청년 600 + 정부 1,800(일반회계) + 기업 600(고보기금) = 3년 3,000만원</li> </ul>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18. 6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2-202-7438)
해외취업 정책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취업정책지원금</li> <li>• 신흥국 : 400만원 (취업 후 1개월 200만원, 6개월 후 200만원)</li> <li>• 선진국 : 200만원 (취업 후 1개월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취업정책지원금</li> <li>• 신흥국 : 800만원 (취업 후 1개월 300만원, 6개월 후 200만원, 12개월 300만원)</li> <li>• 선진국 : 400만원 (취업 후 1개월 2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 12개월 100만원)</li> </ul>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18.6.1)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K-Move 트랙 II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현지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연봉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해외 일자리 취업을 연수 과정 개설</li> <li>• 1인 최대 지원금액 : 1,350만원</li> <li>• 연수기간 : 1,000시간(10개월 이상)</li> <li>• 취업인정 연봉기준 : 3,200만원 이상</li> </ul>	청년고용 촉진특별법 (18.6.1)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 인사혁신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무원 고충 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고충심사 공정성 강화	■ 소속 공무원만으로 구성	■ 심사 시 민간위원 1/3이상 참여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새소식) 보도자료)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18. 8월)  인사혁신처 소청행정과 (044-201-9653)
	고충심사 진술권 강화	■ 필요시 진술기회 부여	■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서면 또는 출석)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새소식) 보도자료)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18. 8월)  인사혁신처 소청행정과 (044-201-9653)

##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아이디어· 기술탈취행위 금지 및 조사·시정권고 대상확대		■ 규정 없음	■ 사업제안,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출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제공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및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 시행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소식알림)보도자료)특허청, 아이디어와 기술 탈취 행위 직접 조사 및 시정권고	부정경쟁방지법 (’18. 7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 미대상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에 추가  ☞(참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센터소개)지원대상	발명진흥법 시행령 (’18. 5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042-481-5961)

## 방송통신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소관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신속확인제도 운영</li> <li>• 정보통신진흥특별법상 신속확인제도 이외에 별도로 홈페이지에 '규제대상 확인요청' 창구를 마련하여 '규제 신속확인' 제도 자체 운영</li> </ul>	내부훈령 (`18.9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 별도 규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부과</li> </ul>	가맹사업법 (`18.7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632)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 별도 규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부과</li> <li>■ 피해 가맹점사업자는 해당 가맹본부를 상대로 징벌적(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가능</li> </ul>	가맹사업법 (`18.7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044-200-4632)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대리점·가맹거래 신고포상금제 실시</p>	<p>■ 법 위반행위신고·제보시포상 및 인센티브 없었음</p>	<p>■ 위반 행위 및 제출된 증거의 경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p> <p>☞(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보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p>	<p>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18.7.17)</p> <hr/> <p>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2)</p>
<p>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p>	<p>■ '원재료 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p>	<p>■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으로 요건 확대</p> <p>☞(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개정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 7월)</p> <hr/> <p>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5)</p>
<p>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금지</p>	<p>■ 규정하지 않음</p>	<p>■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경영 정보 요구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p> <p>☞(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개정하도급법 공포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	<p>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7.17.)</p> <hr/> <p>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5)</p>
<p>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p>	<p>■ 법 위반 아님</p>	<p>■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해당 법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p> <p>■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p>	<p>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2018.9.14./ 2018.10.18.)</p> <hr/> <p>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044-200- 4614)</p>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개정 사건절차규칙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 없음</li> <li>■ 신고인 의견진술보장 관련 명시 규정 없음</li> <li>■ 심의 중 즉석 참고인 채택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민간중심 개편</li> <li>■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진술 기회의 의무적 부여</li> <li>■ 심의 중 즉석 참고인 채택 가능</li> </ul> <p>☞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gt; 공정위 뉴스 &gt; 보도 &gt; 사건절차규칙 개정</p>	<p>사건절차규칙 (*18. 5. 18)</p> <hr/> <p>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3)</p>
<p>대규모회사의 화생기 업에 대한 출자전환시 사후신고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신고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신고 대상으로 전환 (주식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li> </ul>	<p>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8.5.31)</p> <hr/>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044-200- 4364)</p>
<p>수익형 부동산·렌탈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p>	<p>신 설</p>	<p>(발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에 수익금액 또는 수익률을 포함하는 경우, 수익(률)의 산출방법(광고내용이 해당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때에는 보장 기간 및 방법을 포함해야 함)</li> <li>■ 소유권 이전시까지 소비자 렌탈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 [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li> <li>■ 소비자판매가격 (후략)</li> </ul>	<p>중요정보고시 (*18. 7월)</p> <hr/> <p>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5)</p>

##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행정심판 조정의 개시 결정 및 송달절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가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하려는 경우 결정의 방법으로 조정을 개시함으로써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정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림</li> <li>■ 조정개시결정은 서면 또는 간이통지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li> </ul>	행정심판법 시행령 (‘18.5.1.)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2)
	조정회의 운영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원장은 행정심판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을 작성토록 하고, 그 조정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li> </ul>	행정심판법 시행령 (‘18.5.1.)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2)
	조정 불성립시 심리 기일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함</li> </ul>	행정심판법 시행령 (‘18.5.1.)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044-200-7812)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명의의 신고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명의의 신고가 가능해지고, 신고 처리절차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li> <li>☞(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li> <li>☞(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소식)보도·해명자료) 변호사 대리신고로 공익신고자 신분 유출 원천 차단</li> </ul>	공익신고자 보호법 (‘18. 10. 18)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2)	



##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11월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쌀·밭 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9월 조기 지급</li> <li>☞(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직불금 신청</li> </ul>	<p>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18.9월)</p> <p>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 추진단 (044-201-1776)</p>
가족질병보험 시범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질병 치료 보장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li> <li>☞(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가족질병보험</li> </ul>	<p>-</p> <p>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044-201-2559)</p>
농지취득자격 증명신청	■ 방문신청/방문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또는 전자민원(정부24)으로 신청/방문수령 또는 전자적 발급</li> <li>☞(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법령정보)농지법령</li> </ul>	<p>「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제정 (‘18.6월)</p> <p>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5)</p>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 은퇴고령 농업인의 조합 당연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퇴고령농업인도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 가능</li> <li>☞(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지역농업 협동조합정관례 행정예고</li> </ul>	<p>지역농업 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 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정관례 (‘18.6.11.)</p> <p>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4)</p>

##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입 축산물에 대한 이력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쇠고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쇠고기와 수입돼지고기</li> <li>※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8호)</li> </ul>	<p>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8.12월)</p> <hr/> <p>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과과 (02-201-2346)</p>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깻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건설탕·사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좌, 가금부산물,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으로 확대</li> <li>※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 2018.7.1.)법 제17조의3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및 시행규칙 별표2의2(시설출입차량)</li> </ul>	<p>가축전염병 예방법 (‘18.7월)</p> <hr/> <p>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42)</p>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약가격 표시</li> <li>■ 민간기관 위탁을 통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약 실제 판매가격 표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li> </ul> </li> <li>■ 농약판매관리인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li> <li>※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 법령정보)농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li> </ul>	<p>농약관리법 (‘18.11.1) 및 동법 시행령 (‘18.9.6)</p> <hr/> <p>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5)</p>

##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선박운항을 위한 해양예보지수 서비스 확대	■ 13개 항로, 3개 마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7개 항로, 6개 마라나</li> </ul> ☞(참고)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 해양정보포털)해양생활)선박운항지수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051-400-4381)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확대·운영	■ 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뉴저지) 권역 신규 개소</li> <li>• 총 10개 지역 수출지원센터 운영</li> </ul> ☞(참고) 해외시장분석센터 홈페이지 (www.kfishinfo.net) 수출활용정보)수산물 수출지원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3-4)
K-FISH 적용대상 품목 확대	■ 품목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 14개로 확대 (고등어, 바지락, 어란)</li> </ul> ☞(참고) K-FISH 홈페이지(www.kfish.kr) K-FISH 소개)대상품목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고시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2-200-5487)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운영</li> </ul>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7)

##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 관리기준 마련 운영</li> </ul>	<p>「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p> <p>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4)</p>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 관리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함</li> <li>☞(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부서별 사전공표정보</li> </ul>	<p>수산생물질병관리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8.5.29.)</p> <p>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3)</p>
한-인도네시아 해양 과학공동연구 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없음(한·중, 한·페루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인도네시아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설립 운영(한·중, 한·페루 포함 3개소)</li> <li>☞(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 보도자료'인도네시아와 해양수산 협력으로 상생번영의 길 연다'</li> </ul>	<p>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9)</p>
해운산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종합적 지원	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li> <li>☞(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새소식) 보도자료)해운산업 재건 본격 시동... 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회 출범</li> </ul>	<p>한국해양진흥공사법 (*18.7월)</p> <p>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15)</p>

##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신항만건설사업에 따른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방안 시행</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항만의 정의 확대</li> <li>■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절차정비</li> <li>■ 사업시행자 범위 구체화</li> <li>■ 실시계획의 인·허가 의제 확대</li> <li>■ 부대사업 근거마련</li> </ul>	<p>신항만건설촉진법 (’18. 5월)</p> <hr/> <p>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044-200-5934)</p>
<p>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크루즈부두 편) 신설</p>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루즈부두 건설 및 확장시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마련</li> </ul> <p>☞(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버디) 새소식)공지사항</p>	<p>항만법 29조 (’18.8월말)</p> <hr/> <p>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p>
<p>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 편) 신설</p>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구역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 편 설계기준 마련</li> </ul> <p>☞(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버디) 새소식)공지사항</p>	<p>항만법 29조 (’18.8월말)</p> <hr/> <p>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1)</p>

##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b>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만㎡이상</li> </ul> </li>   <li>■ 운영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li> <li>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li> <li>3) 유아의 상시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li>   <li>※(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gt;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li>   <li>■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해당지자체에서 조례로 지정</li>   <li>■ 다만, 최소배차인원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함</li>   <li>※(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gt;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li> </ul>	<p>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8. 8월)</p> <hr/> <p>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042-481-8869)</p>
	<p><b>산불감시원 운영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발방법 및 자격요건 등 세부 기준은 운영기관 장이 별도로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채용심사위원 중 외부인사 50% 이상</li>   <li>■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자 제외</li>   <li>※(참고) 산림청 홈페이지&gt;정보공개&gt;훈령/예규/고시&gt;산불감시원 운영규정 (2018.5.15.)</li> </ul>

##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양기상 안전 문자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기상 문자메세지</li> <li>• 기능 : 수신시간, 지역 설정</li> <li>• 관측자료 : 등표(9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기상 안전 문자메세지 제공 및 관측 자료 확대</li> <li>• 기능 : 수신시간, 지역, 임계값(풍속,파고) 설정 추가</li> <li>• 관측자료 : 등표(9개), 부이(17대), 파고 부이(59대) 추가</li> </ul> <p>☞(참고) 문자메세지 신청: 해양기상정보전달 시스템(marine.kma.go.kr)</p>	-
			<p>기상청 해양기상과 (02-2181-0743)</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SW사업영향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영향평가를 미시행하거나, 사업 재검토 권고의견을 받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민간 시장 침해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W사업영향평가 의무실시</li> <li>■ SW사업영향평가 결과활용 강화(과기정통부 제출 또는 결과 공개)</li> </ul> <p>☞(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MSIT PR) 보도·해명자료)보도자료)정부, 5대 공공SW발주제도 혁신 추진키로</p>	<p>SW 산업진흥법 (’18. 8월)</p>
			<p>과기정통부 SW산업과 (02-2110-1837)</p>

##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생산공정이용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공정시설 내에서 유전자 변형미생물을 이용할 때에 시설 신고 및 허가, 이용승인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공정시설 내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 뿐만 아니라 유전자변형동물·식물을 이용할 때에 시설신고 및 허가, 이용승인 필요</li> </ul>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및 하위법령 (*18.12.13)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44-203-4399)
의류 소상공인, 구매대행 업자 KC인증 부담 완화	생활용품 23개 품목 KC인증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시험, KC마크 표시, 시험성적서 보관 등의 의무 면제 (다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li> </u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홍보마당>보도자료>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8.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5)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KC 마크가 없더라도 구매 대행이 가능 하도록 개선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은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TV·전기청소기·공기청정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 가능</li> </ul> ☞(참고)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홍보마당>보도자료>전안법 시행 D-1개월 대비 가이드북 발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8.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5)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 벤처기업 금지업종 수: 2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금지업종 수: 5개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li> <li>※(참고)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gt;알림소식&gt;보도자료&gt;벤처기업 업종 규제 대폭 완화 된다</li> </ul>	<p>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5월말)</p> <hr/> <p>중소벤처 기업부 벤처혁신 정책과 (042-481-4425)</p>
청년고용기업 지원자금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우대지원 하는 자금 신설</li> <li>※(참고)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gt;알림소식&gt;법령정보&gt;공고&gt;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li> </ul>	<p>'18년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8.5월)</p> <hr/> <p>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382)</p>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 민간(동반위) 자율의 적합업종 제도 운영('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li> <li>※(참고) 중소벤처기업부&gt;알림소식&gt;보도자료&gt;“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제 마련”(5.28)</li> </ul>	<p>특별법 시행 ('18.12.13.)</p> <hr/> <p>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8969)</p>

##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b>불법목재 교역제한 제도시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류 수입시 「관세법」 제 38조에 따라 납세신고 후 통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류 수입 시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품목)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li> <li>* HS Code : 4401-31, 4403, 4407, 4408, 4409, 4412</li> <li>• (목재의 합법성 입증 서류)</li> <li>*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인증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서류,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서류,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li>■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합법성 서류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통관</li> </ul> <p><small>※ (참고) 산림청홈페이지&gt;분야별산림정보&gt;산림보호&gt;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small></p>	<p>「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8.10.1)</p> <hr/> <p>임업통상팀 (042-481-4085)</p>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 준수신고 의무화	접근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유전자원법 시행('17.1.17) 후 1년간 의무조항 유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외국인 등은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하여야 함</li> <li>☞(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2017.1.17. 공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자원법 ('18.8.18)</li> <li>생물다양성과 (044-201-7251)</li> </ul>
	절차준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유전자원법 시행('17.1.17) 후 1년간 의무조항 유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유전자원등에 접근하여 국내에서 이용하는 자는 해당국가의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하여야 함</li> <li>☞(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2017.1.17. 공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자원법 ('18.8.18)</li> <li>생물다양성과 (044-201-7251)</li> </ul>
	이익공유 합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유전자원법 시행('17.1.17) 후 1년간 의무조항 유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자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li> <li>☞(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2017.1.17. 공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전자원법 ('18.8.18)</li> <li>생물다양성과 (044-201-7251)</li> </ul>
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li>■ 공기조화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매회수업은 등록증을 발급받은 전문 업체만이 가능</li> <li>■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까지 확대</li> <li>☞(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자료 &gt;새나가는 냉매 잡아 온실가스 줄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18. 11월)</li> <li>환경부 신기후체제 대응팀 (044-201-6952)</li> </ul>	

##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결과 기준초과한 건축 자재에 대한 대책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 결과 기준초과한 건축자재는 적합확인을 취소하고 회수 등 조치</li> </ul> <p>※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제15583호, 2018.10.18. 시행) 제10조~제10조의6 개정</p>	<p>실내공기질 관리법 (’18. 10월)</p> <hr/> <p>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7)</p>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개선명령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허용기준을 한번만 위반해도 사용중지. 다만, 경미한 위반행위는 기준과 같이 개선명령 부과</li> </ul>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 환경법령)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p>	<p>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18.12.13.)</p> <hr/> <p>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p>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법 제14조의2에 따라 위생 안전기준 부적합 수도용 제품은 인증 취소</li> <li>■ 수도용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법 제14조의3 및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부적합 수도용 제품은 바로 수거·파기 등 조치 실시</li> <li>■ 수도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수도용 제품에 대한 수시검사 도입</li> </ul> <p>※(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 환경법령)수도법</p>	<p>수도법 시행령 (’18. 6.13)</p> <hr/> <p>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8)</p>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법 제14조에 따라 오염된 토양정화 명령을 받게 된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 명령 없이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게 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li> </ul> <p>※ (참고) 환경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대상확대</p>	<p>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18. 7월)</p> <hr/> <p>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86)</p>

##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감면대상 미포함</li> <li>■ 장애인 3등급 중 일부만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감면대상 포함</li> <li>■ 장애인 3등급 전부로 감면대상 확대</li> </ul> <p>※(참고) 환경부홈페이지)법령·정책 환경법령)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p>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18.7.1)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044-201-6713)

##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폭염영향정보 시범제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과 위험수준별 대응요령 제공 (18.6.~)</li> </ul>	기상법 13의 2조 (2018. 4)
			기상청 영향예보추진팀 (02-2181- 0268)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합동 가뭄예경보 발표 (월1회/17.1.~)</li> <li>※행안부 주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상청이 독립적으로 일반국민 대상 기상학적 가뭄예보 제공(월4회/18.11.~)</li> </ul>	기상법 13의 2조 (2018. 4)
			기상청 이상기후팀 (02-2181- 0462)

## 문화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문화재 매매업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관련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매매업자가 상호명, 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변경 신고하도록 함</li> </ul>	문화재보호법 (2018. 12. 13)
	과태료	관련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li> </ul>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8)